

발 간 등 루 번 호
11-1352747-000007-14

현혈기록카드 문진항목 판정기준

- 7차 개정판 -

2021. 12.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1차 개정 2007.9 2차 개정 2009.3 3차 개정 2010.8 4차 개정 2011.6
5차 개정 2017.3 6차 개정 2018.12 7차 개정 2021.12



해당 문진항목 판정기준은 문진업무 표준화를 통해
문진업무 효율성 증대 및 현혈 혈액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현혈기록카드
문진항목 판정기준(19차 개정판)’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활용 시, 책자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혈액원 의사가 판정합니다.

※ 본 책자에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저작권이 있는 내용은 혈액관리본부의 승인없이
무단 복제, 배포, 변경 또는 수정을 금합니다.

CONTENTS

I. 현혈기록카드 문진항목 판정기준 안내문

현혈금지약물, 감염병, 말라리아 관련 현혈제한지역, 현혈관련증상에 대한 안내문을 읽어 보셨습니까? 6

1. 오늘	20
① 평소대로 식사 하셨습니까?	
② 잠은 충분히 주무셨습니까?	
③ 어제, 오늘 음주하셨습니까?	
④ 평소보다 많이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2. 최근 3일 이내	21
3. 최근 1주일 이내	22
① 1주일 이내 주사를 맞거나 약을 복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② 당일 병원에서 현혈금지약물을 처방받으셨거나 진료를 받을 예정이 있습니까?	
4. 최근 1개월 이내	23
① 1개월 이내에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하셨습니까?	
② 최근 1개월 이내에 외국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5. 최근 6개월 이내	25
① 6개월 이내에 사마귀나 점 제거, 피어싱(귀뚫음 등), 문신(반영구화장 포함), 침술, 부항(사혈)을 한 적이 있습니까?	
6. 최근 1년 이내	26
① 1년 이내에 마약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이 있습니까?	
7. 기간에 관계없이	28
8. 현혈금지약물	29
① 건선 치료제, 전립선 치료제(여자는 제외), 탈모증 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등을 복용하거나 처방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9. 감염병 30

- ① 가족 중 B형, C형간염을 앓으신 분(보유자)이 있습니까?

10. 말라리아 32

- ① 군복무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2~30대 남성의 경우 군복무지역 및 당일 말라리아 예방약 복용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외국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11.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34

- ①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영국이나 유럽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II. 채혈판정 기준표

[표 1-1] 약물 투여(복용 및 주사)에 따른 채혈판정기준	36
[표 1-2] 혈소판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품	41
[표 2] 과거 시술 및 수술에 따른 채혈판정기준	44
[표 3] 예방접종에 따른 채혈판정기준	50
[표 4] 질환에 따른 채혈판정기준	54
[표 5] 감염병 종류에 따른 채혈판정기준	62
[표 6] 기타 사유에 따른 채혈판정기준	68
[표 7] 국내 말라리아 관련 현혈제한지역	72
[표 8] 해외여행객을 위한 국가별 말라리아 발생 정보	73
[표 9]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관련 채혈금지 대상 국가	82

III. 부록

[부록 1-1]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채혈금지대상자-공통기준	84
[부록 1-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채혈금지대상자-개별기준	87
[부록 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선별검사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판정기준	88
[부록 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43호 「질병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89
[부록 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5호 「현혈금지약물의 범위 지정」	90
[부록 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현혈기록카드」	91

IV. 안전한 현혈을 위한 문진 플립북 93

I

**현혈기록카드
문진항목 판정기준
안내문**

현혈금지약물, 감염병, 말라리아 관련 현혈제한지역, 현혈관련증상에 대한 안내문을 읽어 보셨습니까?



안내문의 활용

현혈 안내 시 「현혈금지약물 및 예방접종 관련 안내문」, 「감염병 관련 안내문」, 「말라리아 관련 안내문」,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관련 안내문」, 「현혈관련증상 안내문」을 잘 읽어 본 후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현혈할 수 없음을 설명하며 현혈기록 카드 작성 시, 문진 대기 시 상세히 읽어 볼 것을 권장한다.

주의사항

안내문은 혈액관리법 및 대한적십자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조 자료이며, 꼭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문진자가 직접 물어보고 확인한다.

안내문

- 1) 현혈금지약물 및 예방접종 관련 안내문
- 2) 감염병 관련 안내문
- 3) 말라리아 관련 안내문
- 4)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관련 안내문
- 5) 현혈관련증상 안내문

PART

01 현혈금지약물 및 예방접종 관련 안내문

아래의 약물, 주사제는 혈액 및 수혈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으므로 현재 또는 과거에 복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현혈에 참여하실 수 없으며, 문진자(의사, 간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태아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약물

종 류	현혈금지기간	상품명 / [성분명]
건선 치료제	영구	티가손·타가손·테지손 / [에트레티네이트]
건선 치료제	3년	네오티가손·소리아탄 / [아시트레틴]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6개월	아보다트 등 / [두타스테라이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4주	프로스카 등 / [피나스테라이드]
탈모증 치료제	4주	프로페시아 등 / [피나스테라이드]
여드름 치료제	4주	로아큐단(아큐단)·아크날·뉴티논·아큐네탄·이소트렌·이소티나·트레틴·핀플 등 / [이소트레티노인]
손 습진 치료제	1개월	알리툭 / [알리트레티노인]
항악성종양/ 나성결절홍반 (ENL) 치료제	1개월	세엘진탈리도마이드·알보젠텔리도마이드·탈로마·탈리그로브 등 / [탈리도마이드]
항악성종양 치료제	24개월	에리벳지 / [비스모데깁]

2. 기타 약물 및 주사제

종 류	현혈금지기간
사람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소에서 추출한 인슐린, 면역억제제,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위험지역에서 채혈된 혈액의 혈청으로 제조된 진단시약	영구
태반주사제, 혈액응고인자	1년
티클로피딘	2주
항생제(주사 포함)*, 스테로이드제(주사 포함), 보톡스(주사), 클로피도그렐 등	1주
아스피린	3일

* 감기 치료 목적으로 경구 약복용인 경우 3일

3. 예방접종

종 류	현혈금지기간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동물에게 물린 후 공수병(광견병) 예방접종,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예방접종	1년
수두, 상처 후 파상풍, 인플루엔자 생백신(비강용), BCG(결핵예방백신), MMR(흉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혼합백신), 대상포진, 일본뇌염 생백신	4주
황열, 경구용 폴리오(소아마비), 경구용 장티푸스, B형간염*	2주
콜레라,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A형간염, 주사용 장티푸스, 주사용 폴리오(소아마비), 파상풍, 백일해, 일본뇌염 사백신, 신증후군출혈열, 탄저병, 공수병, 폐렴구균, 자궁경부암 백신(가다실, 서바릭스), 뇌수막염(수막구균 포함)	24시간

* B형간염표면항원 검사의 위양성 가능성 때문(WHO 기준)

- 2018년 제1차 혈액안전 정례회의('18.07.24) 시, 3주 → 2주 조정('18.08.01일부터 시행)

PART

02 감염병 관련 안내문

1. 수혈전파가 가능한 감염병

현혈금지기간 (치료종료 후)	질 병 명
영구	만성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바베스열원충증, 사가스병, 변종크로이츠펠트-아콥병(vCJD), 큐열, 리슈만편모충증, 톡소포자충증
3년	말라리아
2년	브루셀라증
1년	매독, 급성B형간염, A형간염
6개월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2. 그 밖의 감염병

현혈보류기간 (치료종료 후)	질 병 명
1년	성매개감염병(성기단순포진, 연성하감, 임질, 첨규콘딜롬, 클라미디아감염증)
5개월	포충증
4개월	사상충증
3개월	악구충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2개월	광동주혈선충증
1개월	결핵, 공수병, 두창, 디프테리아, 라싸열, 라임병, 레지오넬라증, 렙토스피라증, 마버그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발진열, 발진티푸스, 백일해, 보툴리눔독소증, 비브리오패혈증, 성홍열, 세균성이질, 수두, 수막구균 감염증, 수족구병, 신종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아프리카수면병, 야토병(툴라레미아), 에볼라바이러스병, 엔데로바이러스감염증, 유비저,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장티푸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주혈흡충증, 진드기매개뇌염, 쯔쯔가무시증, 콜레라, 탄저, 파라티푸스, 파상풍, 페스트, 폴리오, 풍진, 홍역, 황열
치료 종료시까지	간흡충증, 급성호흡기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메디나충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장일균(VRE)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요충증, 장관감염증, 장흡충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증(CRE)감염증, 편충증, 폐흡충증, 회충증

PART

03 말라리아 관련 안내문

1. 국내 말라리아 관련 현혈제한지역 (2021.7.1일 기준)

여행 및 거주년도	제한지역	
2019~2021년	인천	강화군
	경기	파주시
		연천군
	강원	철원군
	북한	백두산 제외 전지역

※ 해당 지역에 거주나 복무(연중 6개월 이상 숙박)시는 **2년간**, 여행(연중 1일 이상~6개월 미만 숙박)시는 **1년간** 전혈현혈 및 혈소판성분현혈을 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현혈만 가능**

※ 말라리아 관련 현혈제한지역 기준 : 인구 10만명 당 말라리아 환자 발생률이 최근 3년간 평균 10명 이상인 지역

※ 군인의 경우, 채혈 전 문진 시 예방화학요법(말라리아 예방 및 치료제 복용) 시행여부 확인
특히, 문진 시 경기도 양주시 복무여부 확인 권고

2. 해외여행객을 위한 국가별 말라리아 발생 정보

1. 아메리카		
국가명	발생 정보	제외
가이아나 (Guya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 암스테르담(Amsterdam) 및 조지타운(Georgetown) 드문 사례 	-
과테말라 (Guatemal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 1,500m 미만인 시골지역 	안티구아(Antigua), 과테말라시 (Guatemala City) 또는 아티트란 호수(Lake Atitlan)
니카라과 (Nicaragua)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 자치지역(RAAN, RAAS) 보야코(Boaco), 치난데가(Chinandega), 에스텔리(Esteli), 히노테가(Jinotega), 레온(Leon), 마타갈파(Matagalpa), 누에바세고비아(Nueva Segovia) 드문 사례 	마나과(Managua)

1. 아메리카		
국가명	발생 정보	제외
도미니카공화국 (Dominican Republ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아이티(Haiti)와 국경한 주와 라알타그라시아(La Altagracia), 산크리스토발(San Cristobal), 산후안(San Juan), 산토도밍고(Santo Domingo)의 주(휴양지역 포함) 산토도밍고 시(특별행정구역)의 전파는 주로 로스트레스 브라조스(Los Tres Brazos)와 라시에나가(La Cienaga) 지역 다른 주에서는 지역적으로 드문 전파 사례 	-
멕시코 (Mexi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아파스(Chiapas) 및 치후아후아(Chihuahua)의 남부 캄페체(Campeche), 두랑고(Durango), 자리스코(Jalisco), 나야리트(Nayarit), 퀸타나루(Quintana Roo), 산루이스 포토시(San Luis Potosi), 시날로아(Sinaloa), 소노라(Sonora), 타바스코(Tabasco) 드문 사례 	미국-멕시코 국경지역
베네수엘라 (Venezuel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 1,700m 미만의 모든 지역 앙헬폭포(Angel Falls) 	-
벨리즈 (Beliz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물게 지역전파 사례 있음 	벨리즈 시(Belize City), 주요 관광지 제도[앰버그리스키 [Ambergris Caye]]
볼리비아 (Boliv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 2,500m 미만의 모든 지역 	라파즈(La Paz)
브라질 (Braz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크레(Acre), 아마파(Amapa), 아마존나스(Amazonas), 론도니아(Rondonia), 로라이마(Roraima)의 모든 지역 마란하오(Maranhao), 마투그로수(Mato Grosso), 파라(Para) 주(수도 드문 사례) 이스피리투산투(Espirito Santo), 고이아스(Goias), 마투 그로수두술(Mato Grosso do Sul), 피아우이(Piaui), 토칸친스(Tocantins) 주의 시골지역 드문 사례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상파울루(Sao Paolo) 주의 시골 삼림지역 드문 사례 	브라질리아(Brasilia),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상파울루(Sao Paolo) 도시지역 및 이과수폭포(Iguacu Falls)
부르키나파소 (Burkina Faso)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 	-
수리남 (Surina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팔리비니 주의 타파나호니[Sipaliwini(Tapanahony)] 브로코蓬도(Brokopondo) 주와 마로베이너(Marowijne) 주, 시팔리비니(보벤 사라마카[Boven Saramacca]) 드문 사례 	파라마리보(Paramaribo)
아이티 (Hait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라바디항구(Port Labadee) 포함] 	-

1. 아메리카

국가명	발생 정보	제외
에콰도르 (Ecuador) ; 갈라파고스제도 포함 (Including the Galapagos Isla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르치(Carchi), 에스메랄다스(Esmeraldas), 모로나산티아고 (Morona Santiago), 오레야나(Orellana), 파스타사(Pastaza) 주에서 고도 1,500m 미만 지역 고도 1,500m 미만의 다른 주 드문 사례 	과야길(Guayaquil), 키토(Quito) 또는 갈라파고스제도(Galapagos Islands)
엘살바도르 (El Salvad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테말라(Guatemalan) 국경지역에 따라 드문 사례 	-
온두拉斯 (Hondur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아탄(Roatan)과 다른 베이 제도(Bay Islands) 등 모든 지역 	산페드로솔라(San Pedro Sula), 테구시갈파(Tegucigalpa)
코스타리카 (Costa R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라후엘라(Alajuela) 주의 산까를로스(San Carlos) 시에 있는 쿠르티스(Cutris)와 포코솔(Pocosol) 구에서 집중전파 알라후엘라(Alajuela), 에레디아(Heredia), 리몬(Limon), 푼타레나스(Puntarenas) 주의 다른 지방들 드문 지역사례 	-
콜롬비아 (Colomb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 1,700m 미만의 모든 지역 	보고타(Bogota), 카르타헤나(Cartagena), 메데인(Medellin)
파나마 (Pana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리엔(Darien), 구나얄라(Kuna Yala, Guna Yala) 특구, 응가베부글레(Ngabe-Bugle) 특구, 파나마(Panama) 동부 	서파나마 주(Panama Oeste) 파나마 운하(the canal zone) 파나마시티(Panama City)
페루 (Peru)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 2,000m 미만 모든 지역 (이키토스[Iquitos], 푸에르토말도나도[Puerto Maldonado], 라리베르타드[La Libertad]나 람바예케[Lambayeque]의 외진 동부지역) 	리마(Lima), 아레키파(Arequipa), 이카(Ica), 모코과(Moquegua), 나스카(Nazca), 푸노(Puno), 타크나(Tacna), 고지대 관광지 (쿠스코[Cusco], 마추픽추[Machu Picchu], 티티카카[Titicaca] 호수), 태평양 연안(Pacific Coast)
프랑스령기아나 (French Guia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투리(Matoury), 마코우리아(Macouria), 쿠루(Kourou)를 포함한 모든 지역 	쿠루(Kourou) 서쪽 연안지역, 카옌(Cayenne) 시

2. 아프리카

국가명	발생 정보	제외
가봉 (Gab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 	-
김비아(Gambia, Th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 	-
가나 (Gha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 	-
기니 (Guin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 	-
기니비소 (Guinea-Bissau)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 	-

2. 아프리카

국가명	발생 정보	제외
나미비아 (Namib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방고(Kavango) 동쪽 및 서쪽, 쿠네네(Kunene), 오향그웨나(Ohangwena), 오무사티(Omusati), 오사나(Oshana), 오시코토(Oshikoto), 오초존주파(Otjozondjupa), 잠베지(Zambezi) 그 외 지역에 드문 사례 	빈트후크(Windhoek)
나이지리아 (Nige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 	-
남수단 (South Sudan, Republic of)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 	-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짐바브웨(Zimbabwe)와 모잠비크(Mozambique) 국경을 따라 발생 림포포[Limpopo](모파니[Mopani], 벤베[Vhembe] 및 워터버그[Waterberg]군), 음푸말랑가[Mpumalanga] (엘란제니[Ehlanzeni]군), 콰줄루나탈[Kwazulu-Natal] (움크난야쿠데[Umknanyakude]) 크루거국립공원(Kruger National Park) 	-
니제르 (Nig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 	-
라이베리아 (Libe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 	-
르완다 (Rwan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 	-
마다가스카르 (Madagasc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안타나나리보(Antananarivo) 드문 사례] 	-
마요트 (Mayot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문 사례 	-
말라위 (Malaw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 	-
말리 (Mal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 	-
모리타니아 (Mauritan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 	북부에 있는 다클레트누아디부(Dakhlet-Nouadhibou)와 티리스 젬무르(Tiris-Zemour)
모잠비크 (Mozambiq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 	-
베냉 (Ben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 	-
보츠와나 (Botswa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테티(Boteti), 초베[초베국립공원(Chobe National Park) 포함], 엔가미(Ngami), 오카방고(Okavango), 투툼(Tutume) 보비르와(Bobirwa), 북동부[프랜시스타운(Francistown) 포함], 간지(Ghanzi), 마할라피예(Mahalapye), 세로웨 팔라피예(Serowe Palapye) 크갈라가디(Kgalagadi) 북부, 케넷(Keneng) 서부, 남부 구 드문 사례 	가보로네(Gaborone)

2. 아프리카

국가명	발생 정보	제외
부룬디 (Burundi)	• 모든 지역	-
상투메프린시페 (São Tomé and Príncipe)	• 모든 지역	-
세네갈 (Senegal)	• 모든 지역	-
서사하라 (Western Sahara)	• 드문 사례	-
소말리아 (Somalia)	• 모든 지역	-
수단 (Sudan)	• 모든 지역	-
스와질란드 (Swaziland)	• 루봄보(Lubombo)의 모든 지역, 호호(Hhohho), 만지니 (Manzini), 시셀웨니(Shiselweni)의 동부지역을 포함한 모잠비크(Mozambique)와 남아프리카 동쪽 국경을 따라 발생	-
시에라리온 (Sierra Leone)	• 모든 지역	-
앙골라 (Angola)	• 모든 지역	-
우간다 (Uganda)	• 모든 지역	-
에리트레아 (Eritrea)	• 고도 2,200m 미만의 모든 지역	아스마라(Asmara)
에티오피아 (Ethiopia)	• 고도 2,500m 미만의 모든 지역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잠비아 (Zambia)	• 모든 지역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Central African Republic)	• 모든 지역	-
적도기니 (Equatorial Guinea)	• 모든 지역	-
지부티 (Djibouti)	• 모든 지역	-
짐바브웨 (Zimbabwe)	• 모든 지역	-
차드 (Chad)	• 모든 지역	-
카메룬 (Cameroon)	• 모든 지역	-
카보베르데 (Cape Verde)	• 사오 티아고(Sao Tiago)[산티아고(Santiago)] 섬에서 드문 사례	-
케냐 (Kenya)	• 나이로비(Nairobi)를 포함한 고도 2,500 미만의 모든 지역 (동물보호구역[game parks] 포함)	-
코모로 (Comoros)	• 모든 지역	-

2. 아프리카

국가명	발생 정보	제외
코트디부아르 (Côte d'Ivoire)	• 모든 지역	-
콩고공화국(브라자빌) [Congo, Republic of the(Congo- Brazzaville)]	• 모든 지역	-
콩고민주공화국 (キンシャ사)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Congo-Kinshasa)]	• 모든 지역	-
탄자니아 (Tanzania)	• 고도 1,800m 미만의 모든 지역	-
토고 (Togo)	• 모든 지역	-

3.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명	발생 정보	제외
네팔 (Nepal)	• 고도 2,000m 미만의 지역	카트만두(Kathmandu), 전형적인 히말라야 트레킹 (typical Himalayan treks)
동티모르 [Timor-Leste(East Timor)]	• 외쿠시(Oecusse) 주 • 다른 주 드문 사례	-
라오스 (Laos)	• 모든 지역	비엔티안(Vientiane)
말레이시아 (Malaysia)	• 시골 지역	조지타운(Georgetown), 쿠알라 룸푸르(Kuala Lumpur), 페낭 (Penang) 주(페낭섬 포함)
버마(미얀마) [Burma (Myanmar)]	• 바간(Bagan) 포함 고도 1,000m 미만의 지역 • 1,000m 이상 드문 전파	-
바누아트 (Vanuatu)	• 모든 지역	-
방글라데시 (Bangladesh)	• 모든 지역	다카(Dhaka)
베트남 (Vietnam)	• 시골지역만 발생 • 메콩(Mekong) 및 흥(Red) 강 삼각주 드문 발생	다낭(Da Nang), 하이퐁 (Haiphong), 하노이(Hanoi), 호치민(사이공) [Ho Chi Minh City (Saigon)], 냐트랑(Nha Trang), 퀴논(Qui Nhon)

3.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명	발생 정보	제외
부탄 (Bhut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 접경 남부 지역을 따라 고도 1,700m 미만의 시골 지역 드문 발생 계절(5~9월)에 따른 드문 발생(하[Ha], 루엔체[Lhuentse], 몽가르[Monggar], 푸나카[Punakha], 트라시강[Trashigang], 트롱사[Trongsa], 치랑[Tsirang], 양체[Yangtse], 왕듀[Wangdue]) 	불탕(Bumthang), 가자(Gaza), 파로(Paro), 팀부(Thimphu)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멘(Yemen) 국경 아시르(Asir) 및 지잔(Jizan) 토후 주(emirates) 	제다(Jeddah), 메카(Mecca), 메디나(Medina), 리야드(Riyadh), 타이프(Ta'if)
솔로몬제도 (Solomon Isla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 	-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2월 고도 2,500m 미만의 모든 지역 	-
예멘 (Yem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 2,000m 미만의 모든 지역 	사나(Sana'a)
오만 (Om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킬리야(Dakhliyah), 북 바티나(North Batinah), 북 및 남 샤르퀴야(North and South Sharqiyah) 산발적 발생 	-
이란 (Ir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1월에 파르스(Fars) 주, 시스탄-발루체스탄(Sistan-Baluchestan) 주 및 호르모즈간(Hormozgan)과 케르만(Kerman) 주 남부 열대지역의 시골지역 	-
인도 (Ind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봄베이(뭄바이)[Bombay(Mumbai)]와 델리(Delhi)를 포함한 모든 지역 	히마찰프라데시(Himachal Pradesh), 잴무카슈미르(Jammu and Kashmir), 시킴(Sikkim)의 고도 2,000m 이상의 지역
인도네시아 (Indones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사텡가라(Nusa Tenggara)의 라부안바조(Labuan Bajo), 코모도 제도(Komodo Islands) 포함한 인도네시아 동부 모든 지역(말루쿠[Maluku], 말루쿠우타라[Maluku Utara], 누사텡가라티무르[Nusa Tenggara Timur], 파푸아[Papua], 파푸아바랏[Papua Barat]) 칼리만탄(보르네오)[Kalimantan(Borneo)], 누사텡가라바랏(롬복 섬 포함)[Nusa Tenggara Barat(Lombok)], 술리웨시(Sulawesi), 수마트라(Sumatra)의 시골 지역 팡안다란(Pangandaran), 수칼루미(Sukalumi), 우중쿨론(Ujung Kulon) 포함한 자바(Java)의 시골지역 드문 전파 	자카르타(Jakarta), 우붓(Ubud), 휴양지(발리[Bali], 자바[Java], 길리 제도[Gili Islands], 사우전드 제도[Thousand Islands] (볼라우스리부)[Pulau Seribu])
중국 (Ch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남(Yunnan) 성과 티벳(Tibet)의 모투오(Motuo) 현의 중국-버마(미얀마) 국경지역을 따라 드문 사례 	대부분의 주요 리버크루즈 통과 지역
캄보디아 (Cambod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씨엠립(Siem Reap) 포함 전 지역 	프놈펜(Phnom Penh), 앙코르와트 사원(Angkor Wat)

3.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명	발생 정보	제외
태국 (Thai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베마(미얀마)[Burma (Myanmar)], 캄보디아(Cambodia) 및 라오스(Laos) 국경지역, 깔라신(Kalasin), 꼬라비(플라이 프라야)[Krabi (Plai Phraya)], 나콘시탐마랏(Nakhon Si Thammarat), 나라티왓(Narathiwat), 빠따니(Pattani), 광 응아(Phang Nga), 라용(Rayong), 사꼰나콘(Sakon Nakhon), 송클라(Songkhla), 수라타니(Surat Thani), 알라(Yala), 특히 이들 지방 시골의 숲이나 주변 지역 꼬라비(Krabi) 주 일부, 방콕(Bangkok), 치앙마이(Chiang Mai), 치앙라이(Chiang Rai), 코팡안(Koh Phangan), 코사무이(Koh Samui), 푸켓(Phuket) 극히 드문 사례 	꼬라비(Krabi) 주의 제도(코피피[Koh Phi Phi], 코야노이[Koh Yao Noi], 코야오야이[Koh Yao Yai], 코란타[Ko Lanta]) 및 파타야 시(Pattaya city)
타지키스탄 (Tajikist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문 토착 사례 	-
파키스탄 (Pakist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 2,500m 미만의 모든 지역 	-
파푸아뉴기니 (Papua New Guin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 2,000m 미만의 전 지역 	-
필리핀 (Philippi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팔라완섬(Palawan Island), 민다나오섬(Mindanao Island) 	마닐라(Manila), 기타 도시 지역(urban areas)

4. 유럽

국가명	발생 정보	제외
그리스 (Gree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1월에 농촌 지역에서 유입된 말라리아의 드문 국소적 전파 	관광 지역

※ 출처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www.cdc.gov/malaria) (2021.7.1일 기준)

※ 해당 국가에 거주나 복무(연중 6개월 이상)시는 3년간, 여행(연중 1일 이상~6개월 미만 숙박)시는 1년간 전혈현혈 및 혈소판성분현혈을 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현혈만 가능합니다.

PART

04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관련 안내문 (영구 현혈금지)

지역		대상 국가	기간	거주 또는 체류기간
유럽	영국	맨(Man) 섬,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지브롤터, 채널(Channel) 제도, 퍼스랜드 섬	1980년~1996년	1개월 이상
			1997년~현재까지	3개월 이상
	프랑스	프랑스	1980년~현재까지	5년 이상
기타 유럽	BSE 발생 국가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1980년~현재까지	5년 이상
	BSE 발생 위험이 높은 국가	노르웨이, 루마니아,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몰타, 바티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스웨덴, 아이슬란드, 안도라,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크로아티아, 헝가리	1980년~현재까지	5년 이상

※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광우병)

PART

05 현혈관련증상 안내문

대부분의 경우 현혈관련증상을 보이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다음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관미주신경반응

생리적, 심리적(긴장,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혈관미주신경이 자극되어 메스꺼움, 현기증, 구토, 저혈압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바닥에 주저앉거나 머리를 낮추고 다리를 들어올린 자세로 10분 이상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 회복됩니다.

현혈 전 30분 이내에 500mL 정도의 물 섭취, 미리 화장실 다녀오기, 현혈 중 다리를 발목 근처에서 꼬고 종아리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 충분한 휴식 등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종

현혈하는 과정에서 혈액이 혈관 밖 조직 내로 스며들어 생기는 것입니다. 멍듦, 피부색 변함, 부기, 통증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나 일정기간(1~3주) 경과 후 대부분 회복됩니다. 현혈 후 현혈부위를 문지르지 말고 10분 이상 엄지로 꾹 눌러 지혈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경손상 / 팔통증

신경손상은 매우 드물지만 현혈 시 신경이 손상을 받아 찌르는 듯한 방사통, 저림, 근력감소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팔통증은 현혈 중 또는 현혈 후 수 시간 이내에 현혈한 팔에 예방접종 받은 후 느껴지는 것과 비슷한 묵직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연산 반응(성분현혈 시)

성분현혈 동안 항응고제 내의 구연산 성분이 현혈자에게 주입되어 손저림, 메스꺼움, 구토, 입술 떨림, 목 뒷부분의 추운 느낌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유 등 칼슘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전 정맥염

혈전과 관련하여 정맥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열감, 압통, 국소통증, 발적,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혈 후 현혈부위에 이물질이 접촉하지 않도록 일회용 반창고를 최소한 4시간 이상 부착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알러지반응

국소 알러지 반응은 소독약이나 채혈바늘, 반창고밴드 등에 의해 채혈부위에 가려움증, 발적, 두드러기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전신 알러지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오늘

몸 상태 안 좋음



필수 질문

1. 평소대로 식사 하셨습니까?
2. 잠은 충분히 주무셨습니까?
3. 어제, 오늘 음주하셨습니까?
4. 평소보다 많이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개요

- 현혈 당일의 현혈자의 일반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현혈자의 현혈관련증상을 예방하고, 혈액 안전성 위해 요인을 배제하기 위한 문진항목이다.
- 현혈자가 발열이 있거나, 급성질환에 걸렸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할 경우 채혈하지 않는다.

세부항목 판정기준

- 식사, 수면
 - 식사와 수면은 현혈자의 평소 생활습관을 확인한 후 현혈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 음주
 - 숙취, 당일 상태 등을 확인하고 현혈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2. 최근 3일 이내

발열 인후통 설사



① 개요

- 최근(3일 이내) 감염성 질환의 이환여부를 확인하여 무증상 세균 및 바이러스성 혈증으로 인한 혈액 안전성 위해 요인을 배제하기 위한 문진항목이다.
- 최근 3일 이내에 발열, 목감기, 설사 등의 증상을 앓은 경험이 있으면 현혈을 유보한다.

② 세부항목 판정기준

발열 인후통

• 발열, 목감기

- 발열이 있는 경우 감염의 일반적인 증상으로, 현혈자와 수혈자의 안전을 위하여 채혈하지 않는다.
- 치료 종료 및 발열 시, 해열제, 항생제 등의 투약여부를 확인하여 약품으로 인한 채혈 금지 여부를 확인한다[항생제(감기치료 목적 경구 약복용인 경우: 3일) : 1주 채혈금지 등].
- 기침 : 마른기침, 흡연으로 인한 기침은 채혈이 가능하다.

설사

- 하루 3회 이상 계속되는 묽은 변(watery diarrhea)으로 3일간 채혈을 금지한다.
-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인한 설사는 제외한다.
- 설사로 인한 탈수증상 등 현혈자의 전신 상태를 고려하여 판정한다.

3. 최근 1주일 이내

약물 복용 주사



필수 질문

1. 1주일 이내 주사를 맞거나 약을 복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2. 당일 병원에서 현혈금지약물을 처방받으셨거나 진료를 받을 예정이 있습니까?

개요

- 주사제,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여 현혈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약물로 인하여 혈액에 미치는 영향과 수혈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문진항목이다.
- 최근 1주일 이내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투여 받은 적이 있는 경우를 확인하여 질병, 건강상태, 약 복용, 주사제 투여로 인한 채혈금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채혈한다.

세부항목 판정기준 [표 1-1, 표 1-2 참조]

- 약 복용 중일 경우 복용 목적, 약품명 등을 확인하고 표 1-1(36쪽), 표 1-2(41쪽)를 참고하여 질환의 종류, 현혈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채혈 여부를 판정한다.
 - 일반적으로 채혈 당일 약제(치료용 한약 포함)를 투여(복용 또는 주사) 받은 경우는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판정하여 채혈하지 않는다.
 - 비타민제, 미네랄, 소화제, 경구피임약(혈장성분을 녹색화), 보약성 한약의 경우 채혈 가능하다.
- 단순 감기약, 두통약 등 가벼운 질환은 현재 증상이 없고 당일 복용하지 않았으면 채혈이 가능하다.

4. 최근 1개월 이내

- 반복적인 고열, 춥고 떨림, 땀흘림 외국여행 치과치료
- 의료기관에서 단순감기 이외의 질병 진단 또는 치료
- 시술(내시경, 조직검사, 레이저 시술 등) 기타()



필수 질문

1. 1개월 이내에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하셨습니까?
2. 최근 1개월 이내에 외국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④ 개요

- 최근 1개월 이내 감염성 질환의 이환여부를 확인하여 세균 및 바이러스성 혈증으로 인한 수혈 전파성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문진항목이다.
- 최근 1개월 이내 진료 및 시술을 받은 사람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시술 후의 무증상 균혈증으로 인한 수혈전파성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문진항목이다.
- 최근 1개월 이내에 고열, 춥고 떨림, 땀흘림 등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험이 있으면 채혈하지 않는다.
- 치료력, 약 복용력, 말라리아, 브루셀라,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추가 질문을 시행하여 현혈금지기간을 결정한다.

⑤ 세부항목 판정기준

반복적인 고열, 춥고 떨림, 땀흘림

- 채혈 금지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감염병의 경우 치료종료 후 1개월 간 채혈을 금지한다 (감염병의 채혈금지 기간 : 9번 문항 참조).
- 치료, 약 복용 경력이 있는 경우 3번 문항을 참조한다.
- 흉역, 풍진,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등 발열성 질환은 발열이 시작되고 발진이 있는 동안은 혈액이 감염원이 될 수 있으므로 치료종료 후 1개월간 채혈하지 않는다.
- 유행성 독감을 앓은 경우에도 치료종료 후 1개월간 채혈하지 않는다.

- 말라리아, 브루셀라 등 진단력, 치료력은 없으나 증상이 있어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 말라리아 : 10번 문항을 참조하여 확인한다.
 - 브루셀라 : 축산업 종사자,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가축과 접하는 기회가 많은 직업력 여부를 확인한다.
 - 조류인플루엔자 유행 시 : 9번 문항을 참조하여 확인한다.

□ 외국 여행

- 웨스트나일열 등 신종 감염병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근 1개월 이내에 외국 여행(북한 포함)한 경우 채혈을 금지한다(10번, 11번 문항 참조).

□ 치과치료 [표 2(46쪽) 참조]

- 발치, 스케일링, 치주염, 신경치료 등 치과진료에 의해 구강 내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구강 내 상재균이 혈중으로 들어가 균혈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과진료 후 3일 이상 경과 또는 치료 종료 후까지 채혈하지 않는다.
- 출혈이 없는 치과진료(예 : 단순 충치치료, 보철 등)를 받은 경우는 채혈이 가능하다.
- 임플란트의 경우는 드릴링(인공뼈 삽입) 시점에서 1개월 경과하면 채혈이 가능하다.

□ 의료기관에서 단순 감기 이외의 질병 진단 또는 치료

□ 시술(내시경, 조직검사, 레이저 시술 등)

- 최근 1개월 이내에 진료한 경우 6번, 7번 문항을 참고하여 채혈 여부를 판정하며, 시술을 받은 경우 [표 2](44쪽)의 기준 동안 채혈을 금지한다.

5. 최근 6개월 이내

여성만

 임신 분만 유산

- 사마귀·점 제거, 피어싱(귀뚫음 등), 문신(반영구화장 포함)
 침술, 부항(사혈)



필수 질문

6개월 이내에 사마귀나 점 제거, 피어싱(귀뚫음 등), 문신(반영구화장 포함), 침술, 부항(사혈)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④ 개요

- 임신 중이거나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여성 현혈자를 보호하기 위한 문진항목이다.
- 임신 중이거나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은 현혈자 보호를 위해 채혈하지 않는다.
 - 본인이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혈이 가능하다.
 - 수유와 상관없이 출산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채혈이 가능하다.
- 수혈관련급성폐손상(TRALI) 예방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 권고(기간에 관계없이)
 - 여성현혈자의 경우 임신력이 있으면 혈소판성분채혈 불가, 전혈 또는 혈장성분채혈만 가능
 - 전혈채혈의 경우 단일백 채혈은 불가, 이중백·삼중백·사중백 등으로 채혈하며 전혈 유래 신선 동결혈장은 분획용으로 사용

※ 임신력이 있는 여성의 혈액 중 혈장의 양이 많은 혈액제제(전혈, 신선동결혈장, 동결침전제제, 성분 채혈혈소판 등)의 경우 수혈관련급성폐손상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⑤ 세부항목 판정기준 [표 2(44쪽) 참조]

사마귀 · 점 제거, 피어싱(귀뚫음 등), 문신(반영구화장 포함)

침술, 부항(사혈) [표 2(47쪽) 참조]

- 침술, 부항(사혈)의 경우 1회용 도구 사용 및 피부손상 여부를 확인하여 채혈여부를 판정한다.
- 침술(약침)
 - 3일 : 1회용 도구를 사용한 침술, 부항(사혈)
 - 7일 : 1회용 도구를 사용한 약침(한약재 추출물 주입 : 봉침 포함) 등
 - 6개월 : 1회용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침술, 부항(사혈)
 - 1년 : 태반 성분 약침(예 : 자하거 약침) 시술 시

6. 최근 1년 이내

- 입원 수혈 수술 경련 의식소실 예방접종
- 다른 사람이 사용한 주사침에 찔림 마약 주사
- 교도소(소년교도소 포함), 구치소 등에 3일 이상 수감
- 불특정 이성과의 성접촉 또는 남성의 경우 남성과의 성접촉 기타()



필수 질문

1년 이내에 마약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이 있습니까?

개요

- 수혈, 수술, 입원 등 혈액 안전에 영향이 있는 과거력을 확인하여 혈액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문진 항목이다.
- 예방접종(면역글로불린, 생백신, 사백신 등)을 받은 경우 백신 접종에 의한 불현성(무증상) 또는 경증 감염, 예방접종 사유에 의한(B형간염 감염자의 혈액에 노출 등) 혈액 안전성 위해 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문진항목이다.
- 마약, 성접촉, 집단 수용시설 등 HIV 감염 경로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 채혈 제한 조치를 위한 문진항목이다.
- 최근 1년 이내에 수혈, 수술, 입원, 경련, 의식소실, 이식수술, 주사침 찔림 등이 있으면 일정 기간 채혈을 금지한다.
- 최근 1년 이내에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표 3(50쪽)]을 확인하여 채혈 여부를 판정한다.

세부항목 판정기준 [표 2(44쪽) 참조]

- 입원 수술

- 입원, 수술(자가이식 포함)의 경우 수술 전 질환을 평가하여 채혈 여부를 결정한다.
- 수술력이 있는 경우 이식 및 수혈 관련 추가 질문을 시행한다.

예방접종 [표 3(50쪽) 참조]

- 불활성화 백신이나 톡소이드 접종을 받은 경우는 발열 등의 증상이 없고 접종 후 24시간이 지나면 채혈이 가능하다.
- 수두환자와 접촉 시 1개월간 채혈을 금지한다.

다른 사람이 사용한 주사침에 찔림

마약 주사

- 마약 중독의 경우 영구적으로 채혈을 금지한다.

※ 타인의 혈액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간염이나 에이즈 등 수혈전파 감염질환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1년간 채혈을 금지한다.

- 사람이 물어서(human bite) 피부가 손상된 경우
- 채혈, 청소 등에서 타인이 사용한 주사침이나 날카로운 기구에 찔린 경우
- 손상된 점막 또는 피부에 타인의 혈액이 접촉

교도소(소년교도소 포함), 구치소 등에 3일 이상 수감

불특정 이성과의 성접촉 또는 남성의 경우 남성과의 성접촉

-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1년간 채혈을 금지한다.
- 불특정 이성이라 함은 과거병력(sexual history 포함)을 모르거나 대가를 지불한 성행위 상대자 등을 의미한다.

7. 기간에 관계없이

- 암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호흡기질환
- 혈액질환(혈우병, 적혈구증다증 등) 당뇨병
- 피부질환(건선 등) 알코올 또는 마약중독 정신질환
- 경련성질환 자가면역질환(류마티즘 등)
- 장기이식(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등) 기타()



① 개요

- 과거 질병력을 확인하여 현혈자 보호 및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진항목이다.
- 암,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호흡기질환, 혈액질환, 당뇨병, 피부질환, 알코올 또는 마약중독, 정신질환, 경련성질환, 자가면역질환, 장기이식 등을 확인하여 [표 4(54쪽)]에 따라 현혈적격여부를 판정한다.
- 알코올 또는 마약 중독의 경우 영구적으로 채혈을 금지한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약칭 : 장기이식법)

제4조(정의) <개정 2019. 1. 15., 2020. 4. 7.>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 나.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골수·안구
 - 다.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팔 또는 발·다리
 -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
 -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현혈금지 약물

- 건선치료제(에트레티네이트, 아시트레틴)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
- 전립선치료제(두타스테라이드, 피나스테라이드)
- 탈모증치료제(피나스테라이드)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 여드름치료제(이소트레티노인) 기타()



필수 질문

건선 치료제, 전립선 치료제(여자는 제외), 탈모증 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등을 복용하거나 처방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개요

- 현혈금지약물 복용자 및 처방받은 자를 선별하여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진항목이다.
- 건선, 전립선, 탈모증, 여드름 등 치료제를 복용하거나 처방받은 경우 세부항목 판정기준에 따라 현혈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 항암제, 면역억제제 등을 복용한 경우 세부항목 판정기준에 따라 현혈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세부항목 판정기준 [표 1-1(36쪽) 참조]

- 여드름 치료 중인 경우 항생제 또는 피지조절제(이소트레티노인 등) 등의 사용여부에 따라 채혈보류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 네오티가손은 건선 외에 난치성 만성피부질환(예 : 어루러기, 곰팡이성 피부염 등)에서 사용된 예가 있다.

9. 감염병

- 간염(B형, C형 등) 에이즈 말라리아
 성병(임질, 매독 등) 한센병 바베시아증 샤가스병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브루셀라증 기타()



필수 질문

가족 중 B형, C형간염을 앓으신 분(보유자)이 있습니까?

개요

- 감염병 병력을 확인하여 일정기간 채혈금지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수혈전파성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문진항목이다.
- 감염병 병력이 확인된 경우 발병일, 치료여부를 확인하여 세부항목 판정기준에 따라 현혈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 B형/C형간염, 말라리아,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성병(임질, 매독, 첨규콘딜롬 등), 한센병, 바베스열원충증, 샤가스병,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브루셀라증 등 수혈전파 감염병의 병력이 있는 경우 세부항목 판정기준에 해당할 경우 채혈하지 않는다.

세부항목 판정기준 [표 4(54쪽)~표 5(62쪽) 참조]

간염(B형, C형 등) : 표 4(59쪽), 부록 2(88쪽) 참조

- B형간염 항원양성자 및 C형간염 항체양성자의 경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 선별검사 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판정기준(제7조의2 관련))에 따른다.
- 가족 중 B형, C형간염 보유자인 경우

가족 중 보유자	B형간염	C형간염
배우자	현혈자가 표면항체 양성이거나 결혼 후 1년이 지나고 B형간염 검사결과가 정상이면 채혈 가능	결혼 후 1년이 지나고 C형간염 검사결과가 정상이면 채혈 가능
모	현혈자가 표면항체 양성이면 채혈 가능	현혈자가 C형간염 검사결과가 정상이면 채혈 가능
부, 형제 등	현혈자가 B형간염 검사결과가 정상이면 채혈 가능	

□ 브루셀라증

- 치료종료 후 2년간 채혈을 금지한다.
- 발열성 질환에 대한 병력 여부를 확인하여
 - 브루셀라증을 진단받은 적이 있거나,
 - 계속되는 발열(지속적 또는 간헐적)·두통·허탈·발한·오한·관절통·체중감소·전신통 등의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고,
 - 직업적인 특성으로 가축과 접하는 기회가 많은 농업종사자 및 수의사로서 유사증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현혈된 혈액으로 인하여 브루셀라증 전파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유된 날(또는 유사증상의 경험이 있었다고 답변한 경우에는 증상이 소실된 날)로부터 2년간 채혈을 금지한다.

□ 조류인플루엔자

채혈금지대상자	현혈보류기간
조류인플루엔자 의심환자(유증상자), 추정 및 확인 환자	치료 종료 후 1개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Oseltamivir) 등]를 복용한 경우	약 복용 종료 후 2주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지역(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의 가금류 사육 농장주, 종사자 및 동거 가족	해당지역이 위험지역에서 해제되거나 위험지역을 벗어난 후 2주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가금류 등 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요원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자	접종 후 24시간

□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 치료 종료 후 6개월간 현혈 보류
- 최근 2개월 이내 지카 바이러스(Zika virus) 발생국가를 여행한 대상자와 성접촉(콘돔 미사용)이 있는 경우 마지막 성접촉 후 1개월 간 현혈 보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 치료 종료(완치) 후 4주간 현혈 보류
- 코로나19 백신은 매회 접종 시마다 접종일로부터 7일간 현혈 참여 배제, 단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 있을 시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7일간 추가 참여 배제

□ 기타

- 수두, 풍진, 유행성이하선염 등 최근 유행하는 감염병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질문을 권장한다.

10. 말라리아

- 최근 1년 이내에 국내·외 말라리아 관련 현혈제한지역에서
1일 이상 6개월 미만 숙박
- 최근 2년 이내에 국내 말라리아 관련 현혈제한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군복무
- 최근 3년 이내에 국외 말라리아 관련 현혈제한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군복무



필수 질문

1. 군복무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2~30대 남성의 경우 군복무지역 및 당일 말라리아 예방약 복용 확인)
2. 최근 3년 이내에 외국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개요

- 말라리아 관련 현혈제한지역에 대한 채혈 제한 조치를 시행하여 수혈전파성 말라리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문진항목이다.
- 최근 3년 이내 국내·외 거주/방문/여행을 확인하여 수혈전파성 말라리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문진항목이다.

세부항목 판정기준

: 20, 30대 남자의 경우 반드시 군복무지역을 확인할 것

국내 말라리아 관련 현혈제한지역 [표 7(72쪽) 참조]

- 거주 또는 복무 : 해당 지역에 연중 6개월 이상 숙박한 경우
⇒ 2년간 전혈채혈 및 혈소판성분채혈 금지(단, 혈장성분채혈 가능)
- 여행 : 해당 지역에 연중 1일~6개월 미만 숙박한 경우
⇒ 1년간 전혈채혈 및 혈소판성분채혈 금지(단, 혈장성분채혈 가능)
- 국내 말라리아 관련 현혈제한지역에 말라리아 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11월~다음해 3월 사이 한시적으로 체류한 경우, 말라리아 병력이나 특이증상이 없으면 채혈 가능하다.
- 군부대의 해상 훈련 또는 민간인의 어로 작업 등을 위해 국내 말라리아 관련 현혈제한지역 해상에서만 여행 또는 거주한 경우 해상지역이 지상으로부터 30km 이상 떨어졌다면 정상 지역으로 간주하여 전혈채혈이 가능하다.

국외 말라리아 관련 정보 [표 8(73쪽) 참조]

- 거주 또는 복무 : 해당 지역에서 연중 6개월 이상 숙박한 경우
⇒ 3년간 전혈채혈 및 혈소판성분채혈 금지(단, 혈장성분채혈 가능)
- 여행 : 해당 지역에서 연중 1일~6개월 미만 숙박한 경우
⇒ 1년간 전혈채혈 및 혈소판성분채혈 금지(단, 혈장성분채혈 가능)

11.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1980년~1996년까지 1개월 이상 영국 거주/방문/여행
- 1997년~현재까지 3개월 이상 영국 거주/방문/여행
- 1980년~현재까지 5년 이상 유럽국가 거주/방문/여행
- 1980년 이후 영국, 프랑스에서의 수혈



필수 질문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영국이나 유럽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개요

- vCJD 발생위험국가 거주/여행자의 채혈을 방지하기 위한 문진항목이다.
- vCJD로 인한 수혈감염 예방을 위해 1980년 이후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 거주/방문/여행한 경우 **표 9(82쪽)**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채혈을 금지한다.
 - 거주 및 여행기간을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함

II

채혈판정 기준표 [약물] 표 1-1, 1-2

II
채혈판정 기준표
[약물]

표 1-1

약물 투여(복용 및 주사)에 따른 채혈판정기준

※ 국소치료제 (연고, 점안액, 스프레이)는 현혈가능

단, 현혈자의 일반적인 건강상태와 질환, 증상 자체를 고려하여 혈액원 의사가 판단

약물	채혈 판정 기준	채혈 가능	채혈금지 기간		비고
			일정기간 채혈금지	영구 채혈금지	
감기약, 두통약		당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기, 두통 등 가벼운 질환은 현재 증상이 없고 당일 복용이 아니면 채혈가능(발열, 목감기는 3일 보류) * 마른기침, 흡연으로 인한 기침은 채혈 가능
갑상선 대체호르몬제 (thyroxine)	○				갑상선질환: 정상기능이면 채혈 가능 (p54 : 갑상선질환 참고)
강심제(digitalis)		○			현혈자의 질환 자체가 중요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혈액원 의사의 판단에 의한다.
건선치료제 : [아시트레틴] / 네오티가손, 소리아탄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오티가손은 건선 외에 난치성 만성피부질환(예 : 어루러기 –곰팡이성 피부염 등)에서 사용된 예가 있음. * 만성피부질환 : 과각화증, 어린선, 비강진, 편평태선 등 * 한국 로슈사 네오티가손 최초 생산일 : 1997년 4월 * 소리아탄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명임.
건선치료제 : [에트레티네이트]/ 테지손, 티가손 등			○		1996년 4월 국내 허가 취소
건강보조제	○				* 글루코사민, 비타민, 인사돌, 미네랄, 태반추출영양제
고지혈증치료제	○				
고혈압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복용으로 혈압이 정상범위(139/89mmHg 이하)이고 합병증이 없으면 채혈가능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혈액원 의사의 판단에 의함. * 합병증이 있거나 고혈압으로 인한 증상이 있는 경우, 최근 4주 이내 처방내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채혈 금지 * 수축기압 혈압이 90mmHg 미만 또는 180mmHg 이상인 자, 이완기혈압이 100mmHg 이상인 자는 채혈 금지 * 고혈압 병력없이 수축기혈압 160~179mmHg인 경우 혈액원 의사의 판단에 의함 * 아스피린 병행 투여 시 표 1-2 참조

약물	채혈 판정 기준	채혈 가능	채혈금지 기간		비고
			일정기간 채혈금지	영구 채혈금지	
골다공증치료제		○			* 데노수맙 주사제 투여시 6개월간 채혈금지
구충제(치료목적)		7일			
구충제(예방목적)		당일			디스토마약의 경우 일반 구충제와 달리 위장관 배출이 되지 않고 혈중 흡수되므로 예방목적의 경우라도 7일간 채혈보류
근육강화제(경구용)	○				경구용 단백질 보충제는 채혈 가능
근육강화제(주사제)		○			약성분 확인 후 혈액원 의사의 판단에 의함
근육이완제(약, 주사제)		당일			
금연보조제	○				니코틴 패치, 이침(금연침 포함), 챔픽스 등
기미치료제	○				* 도란사민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		* vCJD같은 프리온병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함 * 국내에서 품목 허가된 적 없음
	○				* 재조합 성장호르몬 투여자(유트로핀, 그로트로핀, 소마트로핀) 채혈 가능
당뇨약(경구 혈당강하제)	○				혈당조절이 잘되고 합병증이 없는 경우 [p56 : 당뇨병(인슐린 주사 등) 참고]
동공확장제		당일			
말라리아 예방약		당일			* 약복용 후 어지러움, 오심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당일 배제
멀미약	○				
메토트렉세이트		○			* 건선치료 목적으로 복용 종료 후 4주간 채혈 금지 * 암, 자가면역질환(류마티스 관절염 등) 치료 목적으로 복용 시는 영구 채혈 금지
면역억제제			○		* 사이클로스포린 등 * 일시적으로 복용하고 현재 증상이 없는 경우(예: 아토피 피부염 등) 혈액원 의사의 판단에 의함
보톡스 주사제		7일			
발기부전 치료제	○				* 비아그라, 시알리스
[비스모데깁] 성분의 약물 / 에리벳지		24개월			* 항악성종양 치료제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			○		* 국내에서 품목 허가된 적 없음
소화제	○				

약물	채혈 판정 기준	채혈 가능	채혈금지 기간		비고
			일정기간 채혈금지	영구 채혈금지	
손 습진 치료제 : [알리트레티노인] 성분의 약물 /알리톡			1개월		* 알리톡
수면제	○				
스테로이드제 (부신피질호르몬제)			7일		* 탈모 치료를 위해 두피에 주사하는 경우도 있음 * 스프레이 및 점안액, 연고제는 당일 채혈 가능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과 이를 복제한 약을 비교하여 비슷한 약효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의 한 종류		○			* 악성분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경우 - 최소 8주간 채혈 금지(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중에 채취하는 혈액의 총량은 현혈 1회에 추출하는 혈액의 양을 넘기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 단, 채혈 금지 기간이 8주 이상의 악성분인 경우 그에 준하여 채혈 여부 판정 * 악성분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채혈 금지
임상시험 : 신약이나 식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			1년		*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의 임상시험인 경우 질환에 준하여 판단
알레르기 면역요법		○			* 특이항원 면역요법 : 초기 치료기간 중 채혈 금지, 유지 요법 기간일 경우 질환 상태에 따라 혈액원 의사의 판단에 의함 * 인터페론감마 : 투여기간 중 채혈 금지, 투여 종료 후 질환 상태에 따라 채혈 여부 판정
여드름 치료제 : [isotretinoin] / 로아큐坦(아큐坦), 니메겐, 로스탄, 아크날, 뉴티논, 아큐네탄, 이소트렌, 이소티나, 트래틴, 펍플, 레씨번, 이소티논 등			4주		여드름 치료 중인 경우 항생제[미노ց린 정(Minocycline) 등] 또는 피지조절제(이소트레티노인 등)등의 사용 여부에 따라 채혈 금지 기간을 결정할 수 있음
여성(남성)호르몬제	○				
연골주사			7일		히알루론산 관절 내 주사
인대강화주사			7일		프롤로 치료(포도당, PRP, super PRP 등을 주입하여 인대에 염증을 유발시켜 강화하는 방법), PDRN 주사(DNA 주사)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 [Tamsulosin]성분의 약물/ 탐스로신 [Tezosolin]성분의 약물 / 테조신	○				

약물	채혈 판정 기준	채혈 가능	채혈금지 기간		비고
			일정기간 채혈금지	영구 채혈금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 [두타스테라이드]성분의 약물/ 아보다트			6개월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 프로스카			4주		
제산제	○				현재 증상이 없으면 채혈 가능
줄기세포주사		○			* 자가줄기세포를 주사하는 경우 : 7일 후 채혈 가능 (자가여부 확인 불가시 1년간 채혈 금지) * 관절경으로 주사하는 경우 : 1개월 후 채혈 가능
지루성 피부염		7일			스테로이드에 준하여 적용
지방분해주사제		7일			
체중감량제		○			* 제니칼, 리피다운, 제로펫, 가르시니아, 스웰리스 : 체중 감량, 부작용이 없으면 당일 채혈 가능 * 체중감량 중인 경우 현혈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채혈 여부를 판정
					* 펜타민, 암페타민, 펜디메트라진 성분 : 당일 채혈 금지
					* 삭센다
[탈리도마이드] 성분의 약물 / 세엘진탈리도마이드, 알보젠탈리도마이드, 탈라이드, 탈로마, 탈리그로브 등			1개월		* 나성결절흉반(ENL) / 항악성종양 치료제
탈모증치료제 : [피나스테라이드] /프로페시아			4주		* 단백아미노산제제(마이녹실, 판시딜, 카필러스, 볼두민 등)만 복용시 채혈 가능 * 트리암 주사시 7일간 채혈 금지
태반주사제			1년		* 태반 성분 약침(예 : 자하거 약침) 포함
피임약		○			* 피임 또는 생리주기 조절을 위한 복용은 채혈 가능 * 피부 및 자궁내 삽입 피임기구(임플라논, 루프 등) : 시술 후 염증 및 부정출혈 등 부작용이 없으면 7일 후 채혈 가능 * 사후피임약 복용시 추가 확인(생리 여부, 임신 여부) 후 판정
케로이드, 비후성 반흔 치료제 [Tranilast]성분의 약물/ 리자벤(Rizaben)			7일		

약물	채혈 판정 기준	채혈 가능	채혈금지 기간		비고
			일정기간 채혈금지	영구 채혈금지	
한약(보약성 한약)	○				치료목적인 경우 질환에 따라 판정
항부정맥제		○			현혈자의 질환 자체가 중요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혈액원 의사의 판단에 의함(p57 : 심장질환 참고)
항생제(약)		7일			* 짜짜가무시 예방약(독시사이클린)의 경우 7일 채혈 금지 * 감기치료 목적이라면 3일후 채혈 가능
항생제(연고)	○				질환에 따라 판정
항생제(주사제)		7일			
항응고제			○		* 정맥혈전증, 관상동맥폐색증, 색전증에 의한 심방성세동, 폐동맥 색전증 치료제(와파린, 쿠마딘, 헤파린, 히루딘 등) : 영구배제
		7일			* 기저질환이 현혈금기에 해당되지 않고 예방목적이라면 약복용 중단 후 7일 채혈 가능
항진균제(연고)	○				질정 포함(경구약 복용하지 않는 경우)
항진균제(백선, 무좀, 완선 등 표재성 감염)		7일			피부, 모발, 손톱 등 체표부에 감염되는 진균증, 두부백선, 완선 등으로 일주일에 한번 약 복용하는 경우 치료가 종료되었고 약복용 7일 경과 후 채혈 가능
항진균제(전신성 및 심재성 감염)		4주			장진균증 등 내부장기 감염
항히스타민제	○				* 항류코트리엔
해열진통소염제 (경구투약, 주사제 포함)		당일			* 일반 해열진통소염제는 당일 배제 * 표1-2(혈소판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품)참조
혈액응고인자		1년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1년			
вCJD(변종크로이츠펠트-아人脉病) 위험지역에서 채혈된 혈액의 혈청으로 제조된 진단시약			○		

표 1-2 혈소판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품

성분명(작용기전)	상품명	채혈금지 기간
Aspirin(해열, 진통제)	아스피린, 아스세븐, 이엔타스, 트롬피린 등	
Dipyridamol(혈소판 응집억제, 혈관확장)	레드몰, 리다몰, 센타몰, 페가몰, 페르산친 등	
Indomethacin(해열, 진통, 소염제)	류마메타신, 인데반, 스판슐 등	3일*
Piroxicam(해열, 혈소판응집억제, 진통, 항염)	피록시캄, 제로캄, 로감, 날시캄, 유캄, 로렉신, 로시덴, 뉴캄 등	
Clopidogrel(혈소판응집억제, 항혈전제)	크리빅스정, 세레나데정, 플라빅스정 등	7일
Ticlopidine, Ticlid(혈소판응집억제, 항혈전제)	근화염산 티클로피딘정, 대화염산 티클로피딘정, 마이팜 염산티클로피딘정 등	2주

* 채혈 금지 기간 중 전혈(삼중백, 사중백) 및 성분채혈혈소판 금지(즉, 이중백 전혈 및 혈장성분현혈만 가능)

II

채혈판정 기준표 [시술, 수술] 표 2

표 2

과거 시술 및 수술에 따른 채혈판정기준

시술, 수술	채혈판정기준		비고
	일정기간 채혈금지	영구 채혈금지	
귀뚫음(피어싱)	1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도구를 사용한 귀뚫음(레이저 시술 포함) * 출혈이 없고 무균적으로 시행한 body piercing 후 확장 시술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도구를 사용하지 않음 * 출혈, 무균여부 미확인된 body piercing 후 확장 시술
결핵관련 검사	○		p54 : [표 4] 질환에 따른 채혈판정기준 참조(결핵)
내시경	1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두경은 질환에 따라 판정
다른 사람이 물어 상처가 남 (human bite)	1년		사람이 물어서(human bite) 피부가 손상된 경우 1년간 채혈 금지
다른 사람이 사용한 주사침에 찔림	1년		채혈, 청소 등에서 타인이 사용한 주사침이나 날카로운 기구에 찔린 경우 1년간 채혈 금지
동물에 물린 후 공수병(광견병) 예방접종 받음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수병(광견병) 예방접종 받은 애완동물 : 상처치유 후 채혈 가능 * 공수병(광견병) 예방접종 받지 않은 기타동물 : 1년간 채혈 금지
레이저 시술	7일		의료기관에서 미용목적으로 사마귀, 점, 주근깨, 기미, 주름살 치료, 박피술, IPL, 문신제거, 제모 등 레이저나 냉동요법으로 시술한 경우는 바이러스 등에 노출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시술의 부작용이 없고 상처부위가 잘 아물었다면 치료 종료 후 7일 후 채혈 가능. 단, 의료기관 외에서 시술한 경우 치료 종료 후 6개월간 채혈 보류
미용 수술 및 시술	7일		필러, 자가혈주사(혈소판풍부혈장, PRP), 자가지방이식, 카복시 등의 미용시술을 받은 경우 시술의 부작용이 없고 상처 부위가 잘 아물었다면 치료 종료 후 7일 경과 후 채혈 가능
	1개월		미용(성형)수술
	6개월		안면윤곽술, 양악수술 등
문신(반영구화장 포함)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에서 시술한 경우 1개월, 비의료기관은 6개월 * 헤나문신 후 피부염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채혈 가능
손상된 점막 또는 피부에 타인의 혈액 접촉	1년		손상된 점막 또는 피부에 타인의 혈액이 접촉된 경우 1년간 채혈 금지

시술, 수술	채혈판정기준		채혈 금지기간		비고
	일정기간 채혈금지	영구 채혈금지			
	소수술 (국소마취나 마취가 없었던 수술)	1개월			라식·라섹수술(ICL 렌즈 삽입 포함), 포경수술, 고막접합, 조직검사, 레이저수술(치질수술, 편도선 제거, 비용증 제거수술 등), 모발이식수술, 백내장 수술(인공수정체 교체) 등
수술	대수술 수혈받지 않은 경우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신마취를 했으나 단순골절, 탈장, 치질, 맹장염(충수돌기), 편도선절제, 지방흡입술, pin삽입술 혹은 제거술, 관절경 (십자인대, 무릎연골수술 등), 디스크 내시경 수술, 담낭 적출술(복강경), 여성형유방증(여유증) 등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 경과가 순조로웠고 수혈을 받지 않고 치유되었다면 치료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면 채혈 가능 * 인대수술 시 이식 여부 확인 * 수혈받지 않고 전신마취를 한 일반적인 대수술의 경우는 6개월[담낭적출술(개복수술), 복막염 수술 등]
	자가 이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수술력에 따라 대수술, 소수술에 준하여 판정 * 자신의 피부나 골편을 이식하였거나 인공장기이식(인공각막 이식 등)의 경우는 이식하게 된 질환에 따라 채혈 여부를 판정
	동종이식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장기를 이식 받은 경우(뼈, 인대 포함) * 암 또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해 이식을 받았거나 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투여받은 경험이 있다면 영구 채혈 금지
	이종이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 등 동물 장기를 이식받은 경우 * 이종세포 치료제 또는 이종세포 기반 제품을 투여(적용)받은 경우[상품명 : 홀로덤(Holoderm)]
	뇌수술 (뇌실질, 뇌혈관, 뇌하수체 종양 수술, 모야모야병 수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혈자 보호를 위해 채혈 금지 * 간단한 뇌경막하 혈종 제거 수술로 합병증이 없다면 대수술에 준하여 판정 * 지름길(shunt) 장치 존재시 금지, 그 외의 경우는 혈액원 의사의 판단에 의함.
	심장수술 (판막수술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수술의 경우 영구배제 * 선천성 심실(심방)증격결손, 동맥관 개존증(PDA)의 경우 치료 종료 후 채혈 가능
	비장적출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성변화, 질환에 의한 수술 시 영구 채혈 금지 * 단, 외상 혹은 특발성 면역혈소판감소증에 의한 경우는 혈액원 의사의 판단에 의함.

시술, 수술	채혈판정기준	채혈 금지기간		비고
		일정기간 채혈금지	영구 채혈금지	
수혈 받은 경우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 이후 영국, 프랑스에서 수혈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vCJD 감염 위험으로 영구 채혈 금지 * 자가수혈의 경우 수술력 및 현혈력에 준하여 판단
위장관 조영술 및 조영제 (건강진단 목적)	당일 배제			당일 배제를 원칙으로 하며 현혈자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
장기 기증	장기 기증	○		수술에 준하여 판정
	골수기증자	8주		후유증 없이 회복 후 8주 경과되면 채혈 가능
	조혈모세포채집술 (PBSC) 시술	1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술 후 14일 경과 후 채혈 가능 → 의료기관 요청 등 특수한 경우에만 혈액원 의사의 판단에 따라 72시간 후 채혈 가능
창상봉합술(suture)	7일			치료(약복용) 종료 후 7일이 경과되면 채혈 가능
체외충격파 시술	7일			혈뇨, 배뇨통, 발열 등의 증상이 없다면 치료 종료 후 7일이 지나면 채혈 가능
치과 치료	출혈-유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발치, 스케일링, 치주염, 신경치료 : 구강내 출혈이 있는 경우 구강내 상재균이 혈중으로 들어가 균혈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7일		* 발치(봉합) : 치료(약복용) 종료 후 7일 후 채혈 가능
		1개월	임플란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릴링 시점에서 1개월 경과하면 채혈 가능 * 드릴링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지지대를 세울 경우 치료 종료 후 7일 후 채혈 가능
				교정 시 screw 시술
	출혈-무	당일 가능		단순 충치치료, 보철 등
뼈이식	자가골	1개월		자신의 치아, 자가골(자신의 뼈 채취)
	동종골	1년		기증된 타인의 뼈
	합성골	1개월		인공적으로 만든 자료탄소, 탄산칼슘, 인산 칼슘 등의 원소 가공 대체제
	이종골	영구 채혈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뼈를 채취(소, 돼지, 말 등) * 2015년 7월까지 영구배제, 2015년 8월부터 1개월 후 가능 단, 국외 임플란트 치료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 영구배제

시술, 수술	채혈판정기준		비고
	일정기간 채혈금지	영구 채혈금지	
침술(약침), 부항, 뜸	당일 가능		출혈이 없는 경우[부항, 수지침(본인), 이침(금연침 포함), 피부손상이 없는 뜸 등]
	당일 배제		염증이 발생하지 않은 별침
	3일		1회용 도구를 사용한 침술, 부항(사혈)
	7일		1회용 도구를 사용한 약침(한약재 추출물 주입 : 봉침 포함) 등
	6개월		1회용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침술, 부항(사혈)
	1년		태반 성분 약침(예: 자하거 약침) 시술 시 1년간 채혈 금지
핵의학검사 PET(양전자 단층촬영) 검사(건강진단 목적)	당일 배제		당일 배제를 원칙으로 하며 현혈자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

II

채혈판정 기준표
[예방접종] 표 3

표 3

예방접종에 따른 채혈판정기준

종류	채혈금지기간							비고
	24시간	7일	2주	3주	4주	2개월	1년	
뇌수막염	○							수막구균 포함
대상포진					○			
동물에게 물린 후 광견병							○	
디프테리아	○							
발진티푸스(typhus)	○							
백일해(pertussis)	○							
소아마비(경구용)			○					
소아마비(주사용)	○							
수두					○			수두환자와 접촉 시 1개월간 채혈 금지
예방목적의 광견병 (공수병)	○							
유행성이하선염					○			유행성이하선염 단독 백신은 현재 없고, MMR 혼합백신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예방접종 후 현혈 유예 기간은 풍진 예방접종으로 적용
유행성출혈열- 신증후군 출혈열	○							
인플루엔자(사백신)	○							
인플루엔자(생백신)					○			비강흡입, 상품명 : FluMist(플루미스트)
일본뇌염(사백신)	○							
일본뇌염(생백신)					○			
자궁경부암 (가다실, 서바릭스)	○							유전자 재조합 백신
장티푸스(경구용)			○					
장티푸스(주사용)	○							
천연두						○		

종류	채혈금지기간							비고
	24시간	7일	2주	3주	4주	2개월	1년	
코로나19 (COVID-19)		○						* 매회 접종 시마다 접종일로부터 7일간 금지 * 접종 후 이상증상 있을 시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7일간 추가 금지
콜레라	○							
탄저병(amthrax)	○							
파라타이포이드	○							
파상풍(tetanus)	○							
파상풍 (상처, 못에 찔림 등)					○			
페스트(plague)	○							
폐렴(폐구균 등)	○							
풍진					○			
홍역					○			홍역 단독 백신은 현재 없고, MMR 혼합 백신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예방 접종 후 현혈 유예기간은 풍진 예방 접종으로 적용
황열		○						
A형간염	○							
B형간염(예방목적)		○						B형간염표면항원 검사의 위양성 가능성 때문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HBIG)						○		
BCG접종					○			
MMR					○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Measles, Mumps, Rubella)의 혼합백신임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예방접종 (Q열 등)							○	

24시간* : 사백신이나 톡소이드로 발열 등 이상증상이 없는 경우 24시간 후 채혈 가능

II

채혈판정 기준표
[질환] 표 4

표 4

질환에 따른 채혈판정기준

질환	채혈판정기준	채혈 가능	채혈금지기간		비고
			일정기간 채혈금지	영구 채혈금지	
가와사키병			치료 종료 후 5년		* 완치 후 5년 경과하고 심장질환과 관련된 합병증 및 증상이 없는 경우 현혈 가능
간질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석 등에 의한 황달은 치료종료 후 채혈 가능 * ALT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원인이 비특이적 반응(과체중, 지방간, 과격한 운동, 장기간 보행이나 음주 등)일 경우 문진 또는 재검을 통해 채혈 가능 * 원인불명간염인 경우 치료종료 후 1년이 경과하면 채혈 가능
				○	원인불명의 황달 과거력, 간경화증 등
갑상선질환[그레이브병 (갑상선기능 항진증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혈금지 : ① 치료중(또는 완치 전) ② 악성인 경우 ③ 다발성 질환의 일부 * 방사선 요오드 요법 치료시 6개월 동안 채혈 금지 * 항갑상선 약 복용 중단 후 2년 동안 채혈 금지 * 갑상선 기능 저하증 중 대체호르몬 사용으로 정상 기능이면 채혈 가능 <p>〈갑상선질환 문진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진단명, 수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악성종양, 다발성 질환으로 인한 경우는 채혈을 금지하며 진단 전인 경우는 진단이나 치료 완료시까지 보류한다. ② 위의 질환이 아닌 갑상선질환인 경우 치료 약제를 확인한다(갑상선항진증 치료 후 갑상선 대체호르몬을 투여받은 등의 복합치료일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류기간이 긴 쪽으로 판단한다). ③ 항갑상선 약제로 프로필티오우라실(PTU), 메티마졸(MMI) 등을 투여받은 경우는 약복용 종료 후 2년간 금지하며, 방사성 요오드 요법을 받은 경우는 치료 종료 후 6개월간 채혈을 금지한다. 갑상선 기능 저하에 대한 갑상선호르몬 대체요법(thyroxine제제 synthroid 등)을 받은 경우는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면 채혈이 가능하다.
결핵			치료 종료 후 1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판정 전까지 채혈 금지 * 결핵 치료 종료 후 1개월 채혈 금지 * 잠복결핵 항결핵제 투여 시 약복용 중단 후 1개월 채혈 금지, 잠복결핵 항결핵제 투여하지 않는 경우 현혈 가능

질환	채혈판정기준	채혈 가능	채혈금지기간		비고
			일정기간 채혈금지	영구 채혈금지	
골수염			치료 종료 후 3년		
골절			치료 종료 후까지		* 골절로 인한 수술 시 대수술 또는 소수술에 준하여 판정 * 영구적인 핀 삽입자는 채혈 가능
관절염		○			* 15세 이전 소아 특발성 관절염(소아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완치 후 채혈 가능 * 퇴행성 관절염 등 기타 관절염은 채혈 가능
기면증		○			* 투약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1년 이내 증상이 없는 경우 채혈 가능
기흉		○			* 기저질환(결핵, 낭성섬유증, 폐기종 등)으로 인한 경우 채혈 금지 * 치료 종료 후 채혈 가능 * 투브 삽입술 및 수술 시 소수술에 준하여 1개월 채혈 금지
뇌질환	뇌혈관질환		○		* 뇌경색, 일과성 뇌하혈, 뇌동맥류, 모야모야병 등
	뇌출혈		○		* 뇌실질 및 지주막하 출혈 외상에 의한 출혈 포함
	뇌종양		○		* 뇌하수체 종양 포함
	경련성 질환		○		* 뇌전증(간질) * 채혈 시 발작 가능성 및 뇌실질 질환 가능성 때문
	퇴행성질환		○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감염성 질환	치료 종료 후 4주			뇌막염(뇌수막염) 등
눈병	감염성 눈병	치료 종료 후 4주			감염성 유행성 결막염, 각막염
	녹내장		○		* 안통, 두통, 오심 등 급성 증상 동반 시 채혈 금지 * 안압하강제 점안 시 채혈 가능
	황반변성		○		* 당뇨 합병증인 경우 채혈 금지 *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를 위해 눈 속 주사를 맞은 경우 7일 경과 후 채혈 가능
	망막박리, 망막열공		○		* 시술 및 수술 기준에 따름
	기타 눈질환		증상 소실 시까지		* 단순 결막염, 알러지성 눈병, 맥립증(다래끼) 등

질환	채혈판정기준	채혈 가능	채혈금지기간		비고
			일정기간 채혈금지	영구 채혈금지	
다한증		○			
단순포진			증상 소실시 까지		성기 단순포진은 1년간 채혈 금지
담석증		○			무증상일 경우
당뇨병 (인슐린 주사 등)				○	<p>① 인슐린 주사(고혈당 관리를 위한 일시 사용)를 맞고 4주 경과된 이후 혈당조절이 잘되는 경우 현혈 가능 단, 추후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경우는 현혈 배제</p> <p>② 경구용 혈당 강하제 및 식이요법으로 혈당이 조절되는 경우 현혈 가능(단, 최근 4주 이내에 처방내역 변경이 없는 경우 가능)</p> <p>③ 당뇨에 의한 합병증이 없는 경우 가능</p> <p>④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을 주사 맞는 경우는 영구 배제</p>
대상포진			○		병변 및 증상과 통증 없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채혈 금지
레이증후군			○		<p>* 소아기 아스피린 부작용으로 인함</p> <p>* 회복되고 간기능이 정상이면 채혈 가능</p>
만성피로증후군		무기한 채혈 보류			의료기관에서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받은 경우 무기한 채혈 불가. 단, 만성피로증후군과 일반적인 만성피로는 구분이 필요함
말라리아		치료 종료 후 3년			
봉와직염		○			현재 증상이 없고, 치료 종료 후 채혈 가능
발열질환(독감 포함)			○		반복적인 고열, 춥고 떨림, 땀흘림 증상 발생과 관련하여 채혈 금지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감염병의 경우 치료 종료 후 1개월 간 채혈 금지
백반증(vitiligo), 백피증(albinism)		○			
브루셀라증		치료 종료 후 2년			<p>* 발열성 질환에 대한 병력 여부를 확인하여 2년간 채혈 금지</p> <p>(1) 브루셀라증을 진단받은 경우</p> <p>(2) 계속되는 발열(지속적 또는 간헐적), 두통, 허탈, 발한, 오한, 관절통, 체중감소, 전신통 등의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고,</p> <p>(3) 직업적인 특성으로 가축과 접하는 기회가 많은 농업 종사자 및 수의사로서 유사증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p> <p>* 관련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업무 종사자가 브루셀라증 유사증상을 경험한 경우에도 2년간 채혈 금지</p>

질환	채혈판정기준	채혈 가능	채혈금지기간		비고
			일정기간 채혈금지	영구 채혈금지	
사마귀		○			* 레이저 시술 또는 블레오마이신 침투요법 후 7일 후 채혈 가능
설사			3일		* 하루 3회 이상 계속되는 물은 변(watery diarrhea)을 볼 경우 3일간 채혈 금지 *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의한 설사 채혈 가능 * 설사로 인한 탈수증상 등 현혈자의 전신상태를 고려 채혈 여부 판정
성병			치료 종료 후 1년		임질, 매독, 첨규콘딜롬(콘딜로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성기 단순포진
식중독			치료 종료 후 3일		증상이 사라지고 전신 상태가 호전될때까지 채혈 금지
신결석(요로결석)	○				무증상일 경우
신경섬유종			○		* 악성 변화의 경우 영구 배제
		○			* 악성 변화 이외의 경우 혈액원 의사의 판단에 의함
신장질환			○		* 만성신장질환 : 신부전, 만성사구체신염, 만성신우신염, 신증후군, IgA 신증 등
		○			* 급성신장질환 : 급성사구체신염, 급성신우신염, 소아기 신증후군 등
	○				* 신결석(요로결석) : 무증상일 경우
심장질환			○		*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의 현혈은 혈관수축 및 심장 부담을 증가시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채혈 금지 * 단, 선천성 심실(심방)증격결손, 동맥관 개존증(PDA)은 치료 종료되었다면 채혈 가능 * 부정맥의 경우 현재 증상이 있거나 치료 중인 경우 채혈 금지. 전극도자절제술 및 약물치료로 완치 및 조절된 경우 채혈 가능. 이외의 경우 혈액원 의사의 판단에 의함.
알레르기	○				알레르기성 비염 등 일반적인 알레르기이면서 호흡기 감염이 없으면 채혈 가능
알코올 중독 또는 마약 중독			○		
어지럼증			증상 소실시 까지		* 평상시에 어지럼증을 자주 호소하는 경우에는 다른 질환의 가능성은 고려하여 채혈 금지 * 현혈 후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경험이 있거나, 현혈 시마다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채혈 금지

질환	채혈판정기준	채혈 가능	채혈금지기간		비고
			일정기간 채혈금지	영구 채혈금지	
염증성장질환			○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옴(scabies)		치료 종료 후 4주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증상 소실시 까지		* 증상이 없으면 채혈 가능, 단, 복용 약물을 확인한 후 판정 * 헬리코박터 치료 종료 후 7일간 채혈 보류	
의식소실과 경련			○	의식소실을 동반한 전신경련, 뇌실질질환으로 인한 경우 채혈 금지	
		○		* 다리 쥐나 위경련 등 부분적 경련이면 채혈 가능 * 일사병 등 일시적인 경우 채혈 가능	
임신, 분만 또는 유산		6개월		* 현혈자 보호를 위해 6개월간 채혈 금지 * 단, 본인이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혈 가능 * 수유 중이라도 출산 후 6개월이 경과하였으면 채혈 가능	
자가면역성 질환			○	* 자가면역질환 : 전신성경피증, 쇼그렌증후군, 피부근염, 다발성근염, 다발성경화증, 자가면역성 용혈성빈혈, SLE, 베체씨병, 만성 아프타 구내염, 강직성 척추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은 채혈 금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		* 불안장애(공황장애 등) 및 기분장애(우울증, 조울증 등), ADHD의 경우 감정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채혈 가능	
		○		* 조현병의 경우 혈액원 의사의 판단에 의함	
종양	양성종양	○		치료 종료 후 채혈 가능하며, 결과를 관찰중이라면 채혈 보류	
	악성종양		○	* 국소피부암(기저세포암 또는 편평상피암) 치료 종료 후 5년이 경과하면 채혈 가능 * 상피내암증(자궁경부암) 치료종료 후 5년이 경과하면 채혈 가능 * 상기 이외의 암에 대해서는 혈액원 의사의 판단에 의함	
천식		○		* 치료 종료 후 2주가 지났으며, 현재 증상이 없는 경우 채혈 가능(단, 천식 발작 기왕력이 있는 경우 혈액원 의사의 판단에 의함)	
치질	○			출혈이 있으면 채혈 금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치료 종료 (완치) 후 4주			

질환	채혈판정기준	채혈 가능	채혈금지기간		비고
			일정기간 채혈금지	영구 채혈금지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또는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	가족(혈연) 중에 진단 받은 사람이 있으면 영구 채혈 금지
통풍			○		* 급성 통풍 발작 치료 중이면 채혈 불가 * 무증상으로 요산저하치료 중일 경우 가능(단, 진통제, 항소염제 등 병용투여약물이 있는 경우 약물에 준하여 판단)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치료 종료 후 5년			
피부병	○				* 채혈 부위에 이상이 없는 경우 채혈 가능 * 증상정도, 치료 여부에 따라 혈액원 의사의 판단에 의함
혈액관련질환 (백혈병, 임파종, 만성골수증식성질환, 혈우병 등 출혈질환)				○	* 호즈킨병(악성 림프종) * 만성골수증식성 질환 1) 적혈구증다증 2) 만성골수성백혈병 3) 진성 혈소판증가증
A형간염		치료 종료 후 1년			A형간염은 경구 감염되며 급성 증상이 나타난 후 대부분 치유되나, 극히 드물게 전격성 간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B형간염		급성 치료 종료 후 1년	만성 영구 채혈 금지		* 치료종료 1년 후 확인검사 결정에 따라 결정 * 검사결과가 정상이나 현혈자가 B형 간염을 앓았거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답변한 경우 'HBV 확인검사' 후 채혈 가능
C형간염				○	* C형간염항체(anti-HCV)양성은 C형간염에 이환되었던 과거력을 나타낼 뿐 치유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C형간염은 만성화되어 혈중에 바이러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C형간염 항체가 확인 검사상 양성 또는 판정 보류로 일시유보군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혈하지 않는다. * C형간염은 보유자와 성적 접촉에 의해 감염될 수 있다.
E형간염		치료 종료 후 1년			
HTLV			○		

질환	채혈판정기준	채혈 가능	채혈금지기간		비고
			일정기간 채혈금지	영구 채혈금지	
가족 중 B형간염, C형간염 보유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중 B형간염 보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 현혈자가 표면항체 양성이거나 결혼 후 1년이 지나고 B형간염 검사결과가 정상이면 채혈 가능 - 모 : 현혈자가 표면항체 양성이면 채혈 가능 - 부, 형제 등 : 현혈자가 B형간염 검사결과가 정상이면 채혈 가능 * 가족 중 C형간염 보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 결혼 후 1년이 지나고 C형간염 검사결과가 정상이면 채혈 가능 - 부, 모, 형제 등 : 현혈자가 C형간염 검사결과가 정상이면 채혈 가능

II

채혈판정 기준표 [감염병] 표 5

표 5

감염병 종류에 따른 채혈판정기준

질병명	채혈금지기간 (치료종료 후)	종류	
간흡충증	치료종료 시까지	제4급감염병	
결핵	1개월	제2급감염병, 인수공통	
공수병	1개월	제3급감염병, 인수공통	
급성호흡기감염증	폐렴알균 감염증	치료종료 시까지	제4급감염병, 의료관련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 감염증		
	マイ코플라즈마균 감염증		
	클라미디아균 감염증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남아메리카카풀혈열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개월	제1급감염병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치료종료 시까지	제4급감염병, 의료관련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치료종료 시까지	제4급감염병, 의료관련	
뎅기열	6개월	제3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개월	제1급감염병, 인수공통	
두창	1개월	제1급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생물테러	
디프테리아	1개월	제1급감염병	
라싸열	1개월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	
리임병	1개월	제3급감염병	
레지오넬라증	1개월	제3급감염병	
렙토스피라증	1개월	제3급감염병	

질병명	채혈금지기간 (치료종료 후)	종류	
리프트밸리열	1개월	제1급감염병	
마버그열	1개월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	
말라리아	3년	제3급감염병	
매독	1년	제4급감염병, 성매개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치료종료 시까지	제4급감염병, 의료관련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치료종료 시까지	제4급감염병, 의료관련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치료종료 시까지	제2급감염병, 의료관련	
발진열	1개월	제3급감염병	
발진티푸스	1개월	제3급감염병	
백일해	1개월	제2급감염병	
보툴리눔독소증	1개월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	
브루셀라증	2년	제3급감염병, 인수공통	
비브리오판혈증	1개월	제3급감염병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치료종료 시까지*	제4급감염병, 성매개	
성기단순포진	1년	제4급감염병, 성매개	
성홍열	1개월	제2급감염병	
세균성이질	1개월	제2급감염병	
수두	1개월	제2급감염병	
수막구균 감염증	1개월	제2급감염병	
수족구병	1개월	제4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신종 병원체에 의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다음과 같은 소견을 보이는 자 - 급성출혈열, 급성호흡기증후군, 급성 설사증후군, 급성횡달, 급성신경증후군, 그 외 감염으로 추정되는 증상	발생시 별도 규정	제1급감염병
신종인플루엔자 ¹⁾	1개월	제1급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1개월	제3급감염병	
야토병	1개월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	
에볼라바이러스병	1개월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1개월	제4급감염병	
연성하감	1년	제4급감염병, 성매개	
요충증	치료종료 시까지	제4급감염병	

질병명	채혈금지기간 (치료종료 후)	종류
웨스트나일열	6개월 (증상 발현 또는 진단 후)	제3급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유비저	1개월	제3급감염병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1개월	제2급감염병
인플루엔자	1개월	제4급감염병
일본뇌염	1개월	제3급감염병, 인수공통
임질	1년	제4급감염병, 성매개
장관감염증	<p>세균 :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p> <p>바이러스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p> <p>원충 :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p>	<p>치료종료 시까지</p> <p>제4급감염병</p>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개월	제2급감염병, 인수공통
장티푸스	1개월	제2급감염병
장흡충증	치료종료 시까지	제4급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개월	제1급감염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3개월	제1급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인수공통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6개월	제3급감염병
진드기매개뇌염	1개월	제3급감염병
쭈쭈가무시병	1개월	제3급감염병
첨규콘딜롬	1년	제4급감염병, 성매개
치쿤구니야열	6개월	제3급감염병

질병명	채혈금지기간 (치료종료 후)	종류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증(CRE) 감염증	치료종료 시까지	제2급감염병, 의료관련
콜레라	1개월	제2급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큐열(Q열)	영구	제3급감염병, 인수공통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영구	제3급감염병, 인수공통
크리미안콩고출혈열	1개월	제1급감염병
클라마디아감염증	1년	제4급감염병, 성매개
탄저	1개월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 인수공통
파라티푸스	1개월	제2급감염병
파상풍	1개월	제3급감염병
페스트	1개월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 (폐렴형 페스트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편충증	치료종료 시까지	제4급감염병
폐흡虫증	치료종료 시까지	제4급감염병
풀리오	1개월	제2급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풍진	1개월	제2급감염병
한센병	영구	제2급감염병
해외유입 기생충감염증	광동주혈선충증	2개월
	리슈만편모충증	영구
	메디나충증	치료종료 시까지
	바베스열원충증	영구
	사상충증	4개월
	샤가스병	영구
	아프리카수면병	1개월
	악구충증	3개월
	주혈흡虫증	1개월
	톡소포자충증	영구
	포충증	5개월
홍역	1개월	제2급감염병
황열	1개월	제3급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회충증	치료종료 시까지	제4급감염병

질병명	채혈금지기간 (치료종료 후)	종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영구	제3급감염병
A형간염	1년	제2급감염병
B형간염	* 급성 : 1년 -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 * 만성 : 영구	제3급감염병
C형간염	영구	제3급감염병
E형간염	1년	제2급감염병

: 혈액매개감염병(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고시 지정)

¹⁾ 신종인플루엔자 : 2009~2010년 대유행한 인플루엔자 A(H1N1) pdm09가 아닌 향후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타입의 인플루엔자를 의미함

* 생식기 사마귀, 종양 등 치료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표4] 질환에 따른 채혈판정기준 참조) 채혈 금지.
단, 건강검진 시 진단(무증상)으로 인지한 경우 채혈 가능

II

채혈판정 기준표 [기타 사유] 표 6

표 6

기타 사유에 따른 채혈판정기준

기타사유	채혈 판정 기준	채혈 가능	채혈금지 기간		비고
			일정기간 채혈금지	영구 채혈금지	
불특정이성과 성접촉 또는 남성의 경우 남성과 성접촉			1년		* 불특정 이성은 과거병력(sexual history 포함)을 모르거나 대가를 지불한 성행위 상대자 등을 의미함
외국인	○				<p>①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현혈지원 시점으로부터 해외 출국(여행)기간 제외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자. 단, 해외 출국(여행)기간이 최근 1년 내 90일 이상(비연속적일 경우 기간 합산)일 경우 최종 입국일로부터 1년간 채혈 보류</p> <p>② 현혈자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자(문진은 한국어로 진행됨) ※ 개인정보가 보호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족, 직장동료 등은 통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사 직원 또는 제3자인 경우만 통역으로 인정</p> <p>③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한국 운전면허증, 영주증, 주한미군에서 발급한 신분증(주한미군 가족 포함) 소지자, '외국인등록 예외 대상자'의 경우 여권</p> <p>* 1~3항 모두 만족하여야 함</p>
운전자,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사람	○				근무상태를 고려하여 판정 (화물·여객 운전자, 다이버,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등은 채혈 후 12시간 이상 휴식 가능하여야 함)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대상자			2주		<p>*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의 가금류 사육 농가의 농장주, 종사자, 동거가족</p> <p>*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가금류 살 처분자 및 방역요원 등</p> <p>* 위험지역 해제(거주자) 후 2주가 경과하였으면 채혈 가능</p> <p>* 타미플루(Oseltamivir) 복용시 투약 종료 후 2주가 경과하였으면 채혈 가능</p> <p>[p31 : □ 조류인플루엔자 참고]</p>
장애인	○				<p>*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문진항목을 이해할 수 있으면 현혈 가능하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함</p> <p>* 뇌성마비 : 정맥천자술 동안 현혈자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채혈 가능</p>
죄수, 수감자			1년		에이즈 등 감염에 노출되었을 위험성을 고려하여 1년간 채혈 금지

기타사유	채혈 판정 기준	채혈 가능	채혈금지 기간		비고
			일정기간 채혈금지	영구 채혈금지	
채혈 당시 알코올 섭취자		당일			
채혈에 대한 심한 공포감			○		
항공기 조종사		○			채혈 후 24간 이상 휴식 가능하여야 함
혈관이 특히 가는 경우		○			

※ 전혈현혈을 한 경우 8주 후 같은 요일부터 다음 현혈 가능

※ 성분현혈을 한 경우 2주 후 같은 요일부터 다음 현혈 가능



II

채혈판정 기준표 [말라리아] 표 7, 8

- 국내 말라리아 관련 헌혈제한지역 표7
- 해외여행객을 위한 국가별 말라리아 발생 정보 표8

[말라리아]

표 7

국내 말라리아 관련 현혈제한지역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2021.07.01.)

여행 및 거주년도	지역	경기	인천	강원	북한
2019년 ~ 2021년		파주시 연천군	강화군	철원군	백두산 제외 전지역

- * 말라리아 관련 현혈 제한지역에 거주나 복무(연중 6개월 이상 숙박) 시는 2년간, 여행(연중 1일 이상~6개월 미만숙박) 시는 1년간 전혈현혈 및 혈소판성분현혈을 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현혈만 가능함
- * 군인의 경우, 채혈 전 문진 시 예방화학요법(말라리아 예방 및 치료제 복용) 시행여부 확인
- * 말라리아 관련 현혈 제한지역 숙박 시 무증상의 상태로 말라리아 원충이 적혈구 내에 잠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혈 및 혈소판성분현혈 제한
- * 말라리아 관련 현혈 제한지역에 말라리아 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11월~3월 사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체류한 경우 말라리아 병력이나 특이증상이 없으면 혈구가 포함된 채혈 가능
- * 말라리아 관련 현혈 제한지역 해상에서만 숙박한 경우 해상지역이 지상으로부터 30km 이상 떨어지면 전혈 현혈 가능

표 8**해외여행객을 위한 국가별 말라리아 발생 정보**

출처 :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2021.07.01.)

1. 아메리카		
국가명	발생 정보	제외
가이아나 (Guya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 암스테르담(Amsterdam) 및 조지타운(Georgetown) 드문 사례 	-
과테말라 (Guatemal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 1,500m 미만인 시골지역 	안티구아(Antigua), 과테말라 시 (Guatemala City) 또는 아티트란 호수(Lake Atitlan)
니카라과 (Nicaragua)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 자치지역(RAAN, RAAS) 보아코(Boaco), 치난데가(Chinandega), 에스텔리(Esteli), 히노테가(Jinotega), 레온(Leon), 마타갈파(Matagalpa), 누에바세고비아(Nueva Segovia) 드문 사례 	마나과(Managua)
도미니카공화국 (Dominican Republ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아이티(Haiti)와 국경한 주와 라알타그라시아(La Altagracia), 산크리스토발(San Cristobal), 산후안(San Juan), 산토도밍고(Santo Domingo)의 주(휴양지역 포함) 산토도밍고 시(특별행정구역)의 전파는 주로 로스트레스 브라조스(Los Tres Brazos)와 라시에나가(La Cienaga) 지역 다른 주에서는 지역적으로 드문 전파 사례 	-
멕시코 (Mexi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아파스(Chiapas) 및 치후아후아(Chihuahua)의 남부 캄페체(Campeche), 두랑고(Durango), 자리스코(Jalisco), 나야리트(Nayarit), 퀸타나루(Quintana Roo), 산루이스 포토시(San Luis Potosi), 시날로아(Sinaloa), 소노라(Sonora), 타巴斯코(Tabasco) 드문 사례 	미국-멕시코 국경지역
베네수엘라 (Venezuel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 1,700m 미만의 모든 지역 앙헬폭포(Angel Falls) 	-
벨리즈 (Beliz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물게 지역전파 사례 있음 	벨리즈 시(Belize City), 주요 관광지 제도(앰버그리스키 [Ambergris Caye])
볼리비아 (Boliv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 2,500m 미만의 모든 지역 	라파즈(La Paz)

1. 아메리카		
국가명	발생 정보	제외
브라질 (Braz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크레(Acre), 아마파(Amapa), 아마조나스(Amazonas), 론도니아(Rondonia), 로라이마(Roraima)의 모든 지역 마란하오(Maranhao), 마투그로수(Mato Grosso), 파라(Para) 주(수도 드문 사례) 이스피리투산투(Espirito Santo), 고이아스(Goias), 마투그로수도술(Mato Grosso do Sul), 피아우이(Piaui), 토칸ting스(Tocantins) 주의 시골지역 드문 사례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상파울루(Sao Paolo) 주의 시골 삼림지역 드문 사례 	브라질리아(Brasilia),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상파울루(Sao Paolo) 도시지역 및 이과수폭포(Iguacu Falls)
부르키나 파소 (Burkina Faso)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 	-
수리남 (Surina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팔리비니 주의 타파나호니[Sipaliwini(Tapanahony)] 브로코폰도(Brokopondo) 주와 마로베이너(Marowijne) 주, 시팔리비니(보벤 사라마카[Boven Saramacca]) 드문 사례 	파라마리보(Paramaribo)
아이티 (Hait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라바디항구(Port Labadée) 포함] 	-
에콰도르(Ecuador) ; 갈라파고스제도 포함 (Including the Galapagos Isla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르치(Carchi), 에스메랄다스(Esmeraldas), 모로나산티아고(Morona Santiago), 오레아나(Orellana), 파스타사(Pastaza) 주에서 고도 1,500m 미만 지역 고도 1,500m 미만의 다른 주 드문 사례 	과야킬(Guayaquil), 키토(Quito) 또는 갈라파고스제도(Galapagos Islands)
엘살바도르 (El Salvad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테말라(Guatemala) 국경지역 따라 드문 발생 	-
온두라스 (Hondur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아탄(Roatan)과 다른 베이 제도(Bay Islands) 등 모든 지역 	산페드로솔라(San Pedro Sula), 테구시갈파(Tegucigalpa)
코스타리카 (Costa R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라후엘라(Alajuela) 주의 산까를로스(San Carlos) 시에 있는 쿠르티스(Cutris)와 포코솔(Pocosol) 구에서 집중 전파 알라후엘라(Alajuela), 에레디아(Heredia), 리몬(Limon), 푼타레나스(Puntarenas) 주의 다른 지방들 드문 지역 사례 	-
콜롬비아 (Colomb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 1,700m 미만의 모든 지역 	보고타(Bogota), 카르타헤나(Cartagena), 메데인(Medellin)
파나마 (Pana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리엔(Darien), 구나얄라(Guna Yala) 특구, 응가베부글레(Ngabe-Bugle) 특구, 파나마(Panama) 동부 	서파나마 주(Panama Oeste), 파나마 운하(the canal zone), 파나마시티(Panama City)

1. 아메리카

국가명	발생 정보	제외
페루 (Peru)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 2,000m 미만 모든 지역 (이키토스[Iquitos], 푸에르토말도나도[Puerto Maldonado], 라리베르타드[La Libertad]나 람바예케[Lambayeque]의 외진 동부 지역) 	리마(Lima), 아레키파(Arequipa), 이카(Ica), 모케과(Moquegua), 나스카(Nazca), 푸노(Puno), 타크나(Tacna), 고지대 관광지 (쿠스코[Cusco], 마추픽추 [Machu Picchu], 티티카카 [Titicaca]호수), 태평양 연안(Pacific Coast)
프랑스령기아나 (French Guia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투리(Matoury), 마코우리아(Macouria), 쿠루(Kourou)를 포함한 모든 지역 	쿠루(Kourou) 서쪽 연안지역, 카옌(Cayenne) 시

2. 아프리카

국가명	발생 정보	제외
가봉 (Gab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 	-
감비아 (Gambia, Th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 	-
가나 (Gha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 	-
기니 (Guin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 	-
기니비소 (Guinea-Bissau)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 	-
나미비아 (Namib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방고(Kavango) 동쪽 및 서쪽, 쿠네네(Kunene), 오hang그웨나 (Ohangwena), 오무사티(Omusati), 오사나(Oshana), 오시코토(Oshikoto), 오초존주파(Otjozondjupa), 잠베지 (Zambezi) 그 외 지역에 드문 사례 	빈트후크(Windhoek)
나이지리아 (Nige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 	-
남수단 (South Sudan, Republic of)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 	-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짐바브웨(Zimbabwe)와 모잠비크(Mozambique) 국경을 따라 발생 림포포[Limpopo](모페인[Mopani], 벤베[Vhembe] 및 워터버그[Waterberg]군), 음푸말랑가[Mpumalanga] (엘란제니[Ehlanzeni]군), 콰줄라나탈[Kwazulu-Natal] (움크난야쿠데[Umkhanyakude]) 크루거국립공원(Kruger National Park) 	-

2. 아프리카

국가명	발생 정보	제외
니제르 (Niger)	• 모든 지역	-
라이베리아 (Liberia)	• 모든 지역	-
르완다 (Rwanda)	• 모든 지역	-
마다가스카르 (Madagascar)	• 모든 지역[안타나나리보(Antananarivo) 드문 사례]	-
마요트 (Mayotte)	• 드문 사례	-
말라위 (Malawi)	• 모든 지역	-
말리 (Mali)	• 모든 지역	-
모리타니아 (Mauritania)	• 모든 지역	북부에 있는 다클레트누아디부 (Dakhlet-Nouadhibou)와 티리스젬무르(Tiris-Zemmour)
모잠비크 (Mozambique)	• 모든 지역	-
베냉 (Benin)	• 모든 지역	-
보츠와나 (Botswa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테티(Boteti), 초베[초베국립공원(Chobe National Park) 포함], 앤가미(Ngami), 오카방고(Okavango), 투툼(Tutume) • 보비르와(Bobirwa), 북동부[프랜시스타운(Francistown) 포함], 간지(Ghanzi), 마할라피예(Mahalapye), 세로웨 팔라피예(Serowe Palapye) • 크갈라가디(Kgalagadi) 북부, 퀘泞(Keneng) 서부, 남부 구 드문 사례 	가보로네(Gaborone)
부룬디 (Burundi)	• 모든 지역	-
상투메프린시페 (São Tomé and Príncipe)	• 모든 지역	-
세네갈 (Senegal)	• 모든 지역	-
서사하라 (Western Sahara)	• 드문 발생	-
소말리아 (Somalia)	• 모든 지역	-
수단 (Sudan)	• 모든 지역	-
스와질란드 (Swaziland)	• 루봄보(Lubombo)의 모든 지역, 호호(Hhohho), 만지니 (Manzini), 시셀웨니(Shiselweni)의 동부지역을 포함한 모잠비크(Mozambique)와 남아프리카 동쪽 국경을 따라 발생	-
시에라리온 (Sierra Leone)	• 모든 지역	-

2. 아프리카

국가명	발생 정보	제외
앙골라 (Angola)	• 모든 지역	-
우간다 (Uganda)	• 모든 지역	-
에리트레아 (Eritrea)	• 고도 2,200m 미만의 모든 지역	아스마라(Asmara)
에티오피아 (Ethiopia)	• 고도 2,500m 미만의 모든 지역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잠비아 (Zambia)	• 모든 지역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Central African Republic)	• 모든 지역	-
적도기니 (Equatorial Guinea)	• 모든 지역	-
지부티 (Djibouti)	• 모든 지역	-
짐바브웨 (Zimbabwe)	• 모든 지역	-
차드 (Chad)	• 모든 지역	-
카메룬 (Cameroon)	• 모든 지역	-
카보베르데 (Cape Verde)	• 사오 티아고(Sao Tiago)[산티아고(Santiago)] 섬에서 드문 사례	-
케냐 (Kenya)	• 나이로비(Nairobi)를 포함한 고도 2,500 미만의 모든 지역 (동물보호구역[game parks] 포함)	-
코모로 (Comoros)	• 모든 지역	-
코트디부아르 (Côte d'Ivoire)	• 모든 지역	-
콩고공화국 (브라자빌) [Congo, Republic of the (Congo-Brazzaville)]	• 모든 지역	-
콩고민주공화국 (キンシャ사)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Congo-Kinshasa)]	• 모든 지역	-
탄자니아 (Tanzania)	• 고도 1,800m 미만의 모든 지역	-
토고 (Togo)	• 모든 지역	-

3.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명	발생 정보	제외
네팔 (Nep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 2,000 미만의 지역 	카트만두(Kathmandu), 전형적인 히말라야 트레킹 (typical Himalayan treks)
동티모르 [Timor-Leste (East Tim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쿠시(Oecusse) 주 다른 주 드문 사례 	-
라오스 (Lao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 	비엔티안(Vientiane)
말레이시아 (Malays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골 지역 	조지타운(Georgetown), 쿠알라 룸푸르(Kuala Lumpur), 페낭 (Penang) 주(페낭섬 포함)
버마(미얀마) [Burma (Myanm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간(Bagan) 포함 고도 1,000m 미만의 지역 1,000m 이상 드문 전파 	-
바누아트 (Vanuatu)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 	-
방글라데시 (Banglade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 	다카(Dhaka)
베트남 (Vietn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골지역만 발생 메콩(Mekong) 및 홍(Red) 강 삼각주 드문 발생 	다낭(Da Nang), 하이퐁 (Haiphong), 하노이(Hanoi), 호치민(사이공)[Ho Chi Minh City (Saigon)], 나트랑(Nha Trang), 퀴논(Qui Nhon)
부탄 (Bhut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 접경 남부 지역을 따라 고도 1,700m 미만의 시골 지역 드문 발생 계절(5~9월)에 따른 드문 발생(하[Ha], 루엔체[Lhuentse], 몽가르[Monggar], 푸나카[Punakha], 트라시강[Trashigang], 트롱사[Trongsa], 치랑[Tsirang], 양체[Yangtse], 왕듀 [Wangdue]) 	불당(Bumthang), 가자(Gaza), 파로(Paro), 팀부(Thimphu)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멘(Yemen) 국경 아시르(Asir) 및 지잔(Jizan, Jazan) 토후 주(emirates) 	제다(Jeddah), 메카(Mecca), 메디나(Medina), 리야드 (Riyadh), 타이프(Ta'if)
솔로몬제도 (Solomon Isla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 	-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2월 고도 2,500m 미만의 모든 지역 	-
예멘 (Yem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 2,000m 미만의 모든 지역 	사나(Sana'a)
oman (Om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킬리야(Dakhliyah), 북 바티나(North Batinah), 북 및 남 샤르퀴야(North and South Sharqiyah) 산발적 발생 	-

3.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명	발생 정보	제외
이란 (Ir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1월에 파르스(Fars) 주, 시스탄-발루체스탄(Sistan-Baluchestan) 주 및 호르모즈간(Hormozgan)과 케르만(Kerman) 주 남부 열대지역의 시골 지역 	-
인도 (Ind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봄베이(뭄바이)[Bombay(Mumbai)]와 델리(Delhi)를 포함한 모든 지역 	히마찰프라데시(Himachal Pradesh), 잠무카슈미르(Jammu and Kashmir), 시킴(Sikkim)의 고도 2,000m 이상의 지역
인도네시아 (Indones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사텡가라(Nusa Tenggara)의 라부안바조(Labuan Bajo), 코모도 제도(Komodo Islands) 포함한 인도네시아 동부 모든 지역(말루쿠[Maluku], 말루쿠우타라[Maluku Utara], 누사텡가라티무르[Nusa Tenggara Timur], 파푸아[Papua], 파푸아바랏[Papua Barat]) 칼리만탄(보르네오)[Kalimantan(Borneo)], 누사텡가라바랏(롬복 섬 포함)[Nusa Tenggara Barat(Lombok)], 술라웨시(Sulawesi), 수마트라(Sumatra)의 시골 지역 팡안다란(Pangandaran), 수칼루미(Sukalumi), 우종쿨론(Ujung Kulon) 포함한 자바(Java)의 시골 지역 드문 전파 	자카르타(Jakarta), 우붓(Ubud), 휴양지(발리[Bali], 자바[Java], 길리 제도[Gili Islands], 사우전드 제도[Thousand Islands] (불라우 스리부)[Pulau Seribu])
중국 (Ch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남(Yunnan) 성과 티벳(Tibet)의 모투오(Motuo) 현의 중국-버마(미얀마) 국경지역을 따라 드문 사례 	대부분의 주요 리버크루즈 통과 지역
캄보디아 (Cambod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暹粒(Siem Reap) 포함 전 지역 	ភ្នំពេញ(Phnom Penh), 앙코르 와트 사원(Angkor Wat)
태국 (Thai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베마(미얀마)[Burma (Myanmar)], 캄보디아(Cambodia) 및 라오스(Laos) 국경지역, 칼라신(Kalasin), 끄라비(플라이 프라야)[Krabi (Plai Phraya)], 나콘시탐마랏(Nakhon Si Thammarat), 나라티왓(Narathiwat), 빠따니(Pattani), 팡 응아[Phang Nga], 라용(Rayong), 사꼰나콘(Sakon Nakhon), 송클라(Songkhla), 수라타니(Surat Thani), 암라(Yala), 특하 이들 지방 시골의 숲이나 주변 지역 끄라비(Krabi) 주 일부, 방콕(Bangkok), 치앙마이(Chiang Mai), 치앙라이(Chiang Rai), 코팡안(Koh Phangan), 코사무이(Koh Samui), 푸켓(Phuket) 극히 드문 사례 	끄라비(Krabi) 주의 제도(코피피[Koh Phi Phi], 코야 오노이[Koh Yao Noi], 코야 오야이[Koh Yao Yai], 코란타[Ko Lanta] 및 파타야 시(Pattaya city))
타지키스탄 (Tajikist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문 토착 사례 	-
파키스탄 (Pakist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 2,500m 미만의 모든 지역 	-

3.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명	발생 정보	제외
파푸아뉴기니 (Papua New Guin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 2,000m 미만의 전 지역 	-
필리핀 (Philippi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팔라완섬(Palawan Island), 민다나오섬(Mindanao Island) 	마닐라(Manila), 기타 도시 지역(urban areas)

4. 유럽

국가명	발생 정보	제외
그리스 (Gree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1월에 농촌 지역에서 유입된 말라리아의 드문 국소적 전파 	관광 지역

II

채혈판정 기준표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표 9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표 9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관련 채혈금지 대상 국가

대상 지역		국가명	기간	누적기간
유럽	영국	맨(Man) 섬,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지브롤터, 채널(Channel) 제도, 포클랜드섬	1980년부터 1996년까지	1개월 이상
			1997년부터 현재까지	3개월 이상
	프랑스	프랑스	1980년부터 현재까지	5년 이상
기타 유럽	BSE 발생 국가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1980년부터 현재까지	5년 이상
	BSE 발생 위험이 높은 국가	노르웨이, 루마니아,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몰타, 바티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스웨덴, 아이슬란드, 안도라,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크로아티아, 헝가리		

※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광우병)



III

부 록



부록 1-1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채혈금지대상자 (제2조의2 및 제7조 관련)

〈개정 2017. 3. 20〉

I. 공통기준

1. 건강진단관련 요인

- 가. 체중이 남자는 50킬로그램 미만, 여자는 45킬로그램 미만인 자
- 나. 체온이 섭씨 37.5도를 초과하는 자
- 다. 수축기혈압이 90밀리미터(수은주압) 미만 또는 180밀리미터(수은주압) 이상인 자
- 라. 이완기혈압이 100밀리미터(수은주압) 이상인 자
- 마. 맥박이 1분에 50회 미만 또는 100회를 초과하는 자

2. 질병관련 요인

가. 감염병

- 1) 만성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바베스열원충증, 샤가스병 또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혈액 매개 감염병의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2) 일정기간 채혈금지 대상자

- 가) 말라리아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나) 브루셀라증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 매독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라) 급성 B형간염 병력자로 완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혈액매개 감염병환자 또는 병력자

나. 그 밖의 질병

- 1) 발열, 인후통, 설사 등 급성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없어진지 3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암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질환자, 간경변 등 간질환자, 심장병환자, 당뇨병환자, 류마티즘 등 자가면역질환자, 신부전 등 신장질환자, 혈우병, 적혈구증다증 등 혈액질환자, 한센병환자, 성병환자(매독환자는 제외한다), 알콜중독자, 마약중독자 또는 경련환자. 다만, 의사가 헌혈가능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약물 또는 예방접종 관련 요인

가. 약물

- 1) 혈소판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인 아스피린을 투여 받은 후 3일, 티클로피딘 등을 투여받은 후 2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혈소판 헌혈의 경우에 한한다)
- 2) 이소트레티노인,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태반주사제를 투여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6) 제9조제2호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약물의 투여자로서 해당 약물의 성격, 효과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7) 과거에 에트레티네이트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은 적이 있는 자,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을 투여 받은 적이 있는 자,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을 투여 받은 적이 있는 자,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위험지역에서 채혈된 혈액의 혈청으로 제조된 진단시약 등 투여자, 제9조제1호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약물의 투여자는 영구 금지

나. 예방접종

- 1) 콜레라,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A형간염, B형간염, 주사용 장티푸스, 주사용 소아마비, 파상풍, 백일해, 일본뇌염, 신증후군출혈열, 탄저, 공수병 예방접종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황열, 경구용 소아마비, 경구용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투여 받고 2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풍진, 수두 예방접종 또는 BCG 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진료 및 처치 관련 요인

- 가. 임신 중인 자,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다만, 본인이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 전혈채혈일로부터 2개월, 혈장성분채혈, 혈소판혈장성분채혈 및 두단위혈소판성분채혈일로부터 14일, 백혈구성분채혈 및 한단위혈소판성분채혈일로부터 72시간,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라. 과거 경막 또는 각막을 이식 받은 경험이 있는 자

5. 선별검사결과 부적격 요인

과거 현혈검사에서 B형간염검사, C형간염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 검사(혈장성분현혈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혈액검사 결과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는 자

6. 그 밖의 요인

- 가. 제6조제2항제2호의 문진 결과 현혈불가로 판정된 자
- 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거나 채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부록 1-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채혈금지대상자 (제2조의2 및 제7조 관련)

II. 개별기준

채혈의 종류	기준
320밀리리터 전혈채혈	1. 16세 미만인 자 또는 70세 이상인 자 2. 혈액의 비중이 1.053 미만인 자,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5그램 미만인 자 또는 적혈구용적률이 38퍼센트 미만인 자 3. 과거 1년 이내에 전혈채혈횟수가 5회 이상인 자
400밀리리터 전혈채혈	1. 17세 미만인 자 또는 70세 이상인 자 2. 체중이 50킬로그램 미만인 자 3. 혈액의 비중이 1.053 미만인 자,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5그램 미만인 자 또는 적혈구용적률이 38퍼센트 미만인 자 4. 과거 1년 이내에 전혈채혈횟수가 5회 이상인 자
혈장 성분채혈	1. 17세 미만인 자 또는 70세 이상인 자 2. 혈액의 비중이 1.052 미만 또는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0그램 미만인 자 3. 직전 현혈혈액검사 결과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청단백량이 6.0그램 미만인 자
한 단위 혈소판 성분채혈	1. 17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 2. 혈액의 비중이 1.052 미만 또는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0그램 미만인 자 3. 혈액 1마이크로리터당 혈소판수가 15만개 미만인 자 4. 한 단위 혈소판성분채혈 72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과거 1년 이내에 성분채혈횟수가 24회 이상인 자
두 단위 혈소판 성분채혈	1. 17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 2. 혈액의 비중이 1.052 미만 또는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0그램 미만인 자 3. 혈액 1마이크로리터당 혈소판수가 25만개 미만인 자 4. 과거 1년 이내에 성분채혈횟수가 24회 이상인 자
혈소판 혈장 성분채혈	1. 17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 2. 혈액의 비중이 1.052 미만 또는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0그램 미만인 자 3. 직전 현혈혈액검사 결과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청단백량이 6.0그램 미만인 자 4. 혈액 1마이크로리터당 혈소판수가 15만개 미만인 자 5. 과거 1년 이내에 성분채혈횟수가 24회 이상인 자
두 단위 적혈구 성분채혈	1. 17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 2. 체중이 70킬로그램 미만인자 3.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4.0그램 미만인 자 4. 과거 1년 이내에 전혈채혈횟수가 4회 이상 또는 성분채혈횟수가 24회 이상 또는 두단위적혈구 성분채혈횟수가 2회 이상인 자

비고 : 65세 이상인 자의 현혈은 60세부터 64세까지 현혈한 경험이 있는 자에만 가능함

부록 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선별검사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판정기준(제7조의2 관련)

〈개정 2020. 6. 25〉

부적격 요인	안전성검사 방법	채혈금지대상 해제기준
B형간염	B형간염표면항원(HBsAg) 검사 B형간염핵심항체(Anti-HBc) 검사 B형간염바이러스(HBV) 핵산증폭검사 [중합효소연쇄반응(PCR) 포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모두 음성일 것 2. B형간염핵심항체(Anti-HBc)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것 가. 완치 후 6개월이 지났을 것 나. B형간염표면항원(HBsAg) 검사 결과 및 B형간염바이러스(HBV) 핵산증폭검사 (PCR 포함) 결과가 음성일 것 다. B형간염표면항체(Anti-HBs)의 추가 검사 결과가 100mIU/mL 이상일 것
C형간염	C형간염바이러스(HCV) 항체 검사 C형간염바이러스(HCV) 핵산증폭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PCR) 포함]	
사람T세포림프친화 바이러스(HTLV)감염증 (혈장성분헌혈의 경우는 제외한다)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I형/ II 형 항체 검사	모두 음성일 것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 검사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핵산증폭검사 [중합효소연쇄반응(PCR) 포함]	

비고 : 1. B형간염표면항원(HBsAg), B형간염핵심항체(Anti-HBc), C형간염바이러스(HCV) 항체, 사람면역결핍 바이러스(HIV) 항체 및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I형/ II 형 항체의 검사는 효소면역측정법 (EIA)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감도를 가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2. 위 검사 방법 외에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성 검사 방법 및 채혈금지 대상 해제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부록 3**질병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시행 2018. 4. 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43호, 2018. 4. 3.,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제7조, 별표1의2 채혈금지대상자 Ⅰ. 공통 기준 제2호 질병관련요인 중 가목 1) 및 2)마)의 규정에 따른 채혈금지대상 범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혈금지대상) ① 「혈액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2 채혈금지대상자 Ⅰ. 공통기준 제2호 질병관련요인 가목 1)의 규정에 따른 채혈금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감염병의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로 한다.

1. 변종 크로이즈펠트-야콥병
2. 큐열
3. 리슈만편모충증
4. 톡소포자충증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채혈금지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정하는 혈액매개 감염병

② 「혈액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2 채혈금지대상자 Ⅰ. 공통기준 제2호 질병관련요인 가목 2)마)의 규정에 따른 채혈금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A형간염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덩기열, 웨스트나일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하게 정하는 감염병 환자 또는 병력자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록 4

현혈금지약물의 범위 지정

[시행 2016. 12.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5호, 2016. 12. 15.,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마목 및 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현혈금지약물의 범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대적 현혈금지약물)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호마목에 따라 약물의 성분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현혈이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 : 3년
2.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또는 태반주사제 : 1년
3.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 : 6개월
4. 이소트레티노인 또는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 : 1개월
5. 혈소판 현혈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약물
 - 가. 아스피린 : 3일
 - 나. 티클로피딘 : 2주
6. 알리트레티노인 성분의 약물 : 1개월
7. 그 밖에 채혈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 중 긴급히 관리 또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약물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록 5

현혈기록카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서식]

[시행 2021. 1. 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2021. 1. 5., 일부개정]

현 혈 기록 카드

(앞쪽)

혈액형		현혈증서번호 (바코드부착)
-----	--	-------------------

<현행자 기록란 : □란은 반드시 본인이 기입하시고 뒷면 문진사항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황 자 인 적 사 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cm	kg	혈액형	
	직업	1 고교생	2 대학생	3 군인	4 회사원	5 공무원	6 자영업	7 종교교	8 가사	9 기타	-	-				-
	도로명 주소												직장명			
													이동 전화	()	-	
													주택 전화	()	-	
													전자메일	@		
현황 경험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가장 최근에 현황한 일자는 언제입니다?					년 월			
※ 현황혈액 검사결과를 받으시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검사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통보되지 않습니다)																
※ 현황관련내용(현황 후 유의사항; 현황 가능 등) 수신 동의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문구마세지 <input type="checkbox"/> 이메일(※증복체크 가능)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다음은 현혈자와 수혈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진사항들입니다.

- 혈액관리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혈자는 안전한 혈액의 채혈 및 공급을 위하여 신상 및 병력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 혈자의 부정적인 정보제공 및 답변이 수혈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직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검사를 목적으로 한 혈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의해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결과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혈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가 가능하며, 혈액관리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 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혈액원 기록란 > ※ 이 부분은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과거 현혈경력 및 검사결과 조회

조회 결과	□ 현월경력 없음 □ 적격 □ 부적격 □ 판정불가					최근 1년간 현월횟수 성분제출: 회
	월액형	총 현월횟수	회			
	마지막 현월일자	년	월			
실명확인방법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사원증 □ 학생증 □ 청소년증 □ 군신분증(공무원증) □ 영국지문 □ 학적부(생활기록부) □ 단체현행(□ 명령표 □ 인식표) □ 기타(

■ 건강진단

검진 항목 (침고지)	[1] 혈압(mmHg) (수축기 90~179 이완기 <100)	[2] 체온(°C) (37.5~104)	[3] 맥박회수/분 (50~100)	[4] 혈액비중 (전형혈액 1.053 성분체결 1.052)	[5] 혈색소(g/dL) (전형체결 ≥ 12.5 성분체결 ≥ 12.0)	[6] 혈소판(x10 ⁹ /μL) (전단형별소판성분체결 ≥ 150 두단형위주별소판성분체결 ≥ 150 혈소판증강분체결 ≥ 150)	[7] 파격 총 단백(g/dL) (정상평균 ± 20% 합성단백증/분비단백증)	[8] 연령(세) (320년형 ≥ 16, 기티 ≥ 17)
점정 결과 및 판정	/	<input type="checkbox"/> 정상 이상	<input type="checkbox"/> 정상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63 이상 <input type="checkbox"/> 1.052 <input type="checkbox"/> 1.052 미만			<input type="checkbox"/> ≥ 6.0 <input type="checkbox"/> < 6.0	<input type="checkbox"/> 적합 부적합

■ 혼혈적부판정 : 혼혈가능 혼혈불가

현 혈 종 류	전혈채혈						성분채혈				비고			
	400 mL			320 mL			혈장	한단위 혈소판	두단위 혈소판	혈소판 저장	두단위 적혈구			
	4중백 (Q/B)	3중백 (T/B)	2중백 (D/B)	3중백 (T/B)	2중백 (D/B)	단일백 (S/B)								
부적격사유	부적격항목번호						상세 사유							
	<input type="checkbox"/> 과거한혈경력 및 검사결과부적격													
	<input type="checkbox"/> 문진부적격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부적격													

년 월 일
문진자 : (서명 또는 인)
체혈자 : (서명 또는 인)
혈액원
뒤쪽으로 넘겨서 계속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현혈기록카드 문진항목 판정기준

(뒤쪽)

1. 현혈금지약물, 감염병, 말라리아 관련 현혈제한지역, 현혈관련증상에 대한 안내문을 읽어 보셨습니까? 예 아니오

2. 아래와 같은 경험을 해당기간 안에 하신 경우 해당되는 사항의 란에 ↘표 해 주십시오.

분류	문진사항	상세 내용
1 오늘	<input type="checkbox"/> 몸상태 안 좋음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2 최근 3일 이내	<input type="checkbox"/> 발열 <input type="checkbox"/> 인후통 <input type="checkbox"/> 설사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3 최근 1주일 이내	<input type="checkbox"/> 약물 복용 <input type="checkbox"/> 주사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4 최근 1개월 이내	<input type="checkbox"/> 반복적인 고열, 출고 열림, 땀흘림 <input type="checkbox"/> 외국 여행 <input type="checkbox"/> 치과치료 <input type="checkbox"/> 의료기관에서 단순 감기 이외의 질병 진단 또는 치료 <input type="checkbox"/> 시술(내시경, 조직검사, 레이저 시술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5 최근 6개월 이내	여성만 <input type="checkbox"/> 임신 <input type="checkbox"/> 분만 <input type="checkbox"/> 유산 <input type="checkbox"/> 사마귀·점거, 피어싱(귀뚫음 등), 문신(반영구화장 포함) <input type="checkbox"/> 침술, 부항(사혈)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6 최근 1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입원 <input type="checkbox"/> 수혈 <input type="checkbox"/> 수술 <input type="checkbox"/> 경련 <input type="checkbox"/> 의식소실 <input type="checkbox"/> 예방접종 <input type="checkbox"/> 다른 사람이 사용한 주사침에 찔림 <input type="checkbox"/> 미약 주사 <input type="checkbox"/> 교도소(소년교도소 포함), 구치소 등에 3일 이상 수감 <input type="checkbox"/> 불특정 이성과의 성접촉 또는 남성의 경우 남성과의 성접촉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7 기간에 관계없이	<input type="checkbox"/> 알 <input type="checkbox"/> 심장질환 <input type="checkbox"/> 신장질환 <input type="checkbox"/> 간질환 <input type="checkbox"/> 호흡기질환 <input type="checkbox"/> 혈액질환(혈우병, 적혈구증다증 등) <input type="checkbox"/> 당뇨병 <input type="checkbox"/> 피부질환(건선 등) <input type="checkbox"/> 알코올 또는 미약중독 <input type="checkbox"/> 정신질환 <input type="checkbox"/> 경련성질환 <input type="checkbox"/> 자가면역질환(류마티즘 등) <input type="checkbox"/> 장기이식(신장, 간장, 허장, 심장, 폐, 골수, 인구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3. 현혈관련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해당되는 사항의 란에 ↘표 해 주십시오.

분류	문진사항	상세 내용
8 현혈금지 약물	<input type="checkbox"/> 건선치료제(에트레티니아트, 아시트레틴) <input type="checkbox"/>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 <input type="checkbox"/> 전립선치료제(두티스테라이드, 피나스테라이드) <input type="checkbox"/> 탈모증치료제(피니스테라이드) <input type="checkbox"/>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input type="checkbox"/> 어드름치료제(이소트레티노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시기: 내용:
9 감염병	<input type="checkbox"/> 긴염(B형, C형 등) <input type="checkbox"/> 에이즈 <input type="checkbox"/> 말라리아 <input type="checkbox"/> 성병(임질, 매독 등) <input type="checkbox"/> 한센병 <input type="checkbox"/> 바비시아증 <input type="checkbox"/> 사기사병 <input type="checkbox"/> 변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input type="checkbox"/> 브루셀라증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시기: 내용:
10 말라리아	<input type="checkbox"/> 최근 1년 이내에 국내·외 말라리아 관련 현혈제한지역에서 1일 이상 6개월 미만 숙박 <input type="checkbox"/> 최근 2년 이내에 국내 말라리아 관련 현혈제한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군복무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 이내에 국외 말라리아 관련 현혈제한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군복무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시기: 지역:
11 변증 크로 이츠펠트- 야 콤 병 (vCJD)	<input type="checkbox"/> 1980년~1996년까지 1개월 이상 영국 거주/방문/여행 <input type="checkbox"/> 1997년~현재까지 3개월 이상 영국 거주/방문/여행 <input type="checkbox"/> 1980년~현재까지 5년 이상 유럽국가 거주/방문/여행 <input type="checkbox"/> 1980년 이후 영국, 프랑스에서의 수혈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기간: 국가:

<동의서>

- 「혈액관리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현혈에 관한 유의사항을 설명 받았으며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 나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고귀한 뜻에 동참하여 자발적으로 현혈하는데 동의합니다.
 - 나는 문진사항과 현혈관련증상에 대해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였습니다.
 - 나는 수혈 받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포함하여 과거의 현혈경력, 검사결과 및 세부사항(현혈부적격 관련 정보 등)을 관리, 전신 조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약 나의 혈액이 수혈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재혈금지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음에 동의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 내가 현혈한 혈액(검체 등 포함)이 최소 10년간 보관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며,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 의학적 연구,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혈액관리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시약평가, 수혈부작용 원인규명, 현혈경력이 있는 군장병 유해 신원확인, 6.25 전사자 신원확인 및 유가족 찾기를 위한 DNA 시료 채취

년 월 일

현혈자 성명 :

(서명)

IV

**안전한 헌혈을 위한
문진 플립북**

철저한 현혈 문진은
현혈자의 건강과 수혈자의 안전을 위한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

(04637) 서울시 종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21층
TEL. 02-2628-3670~3681 FAX. 02-2628-3688